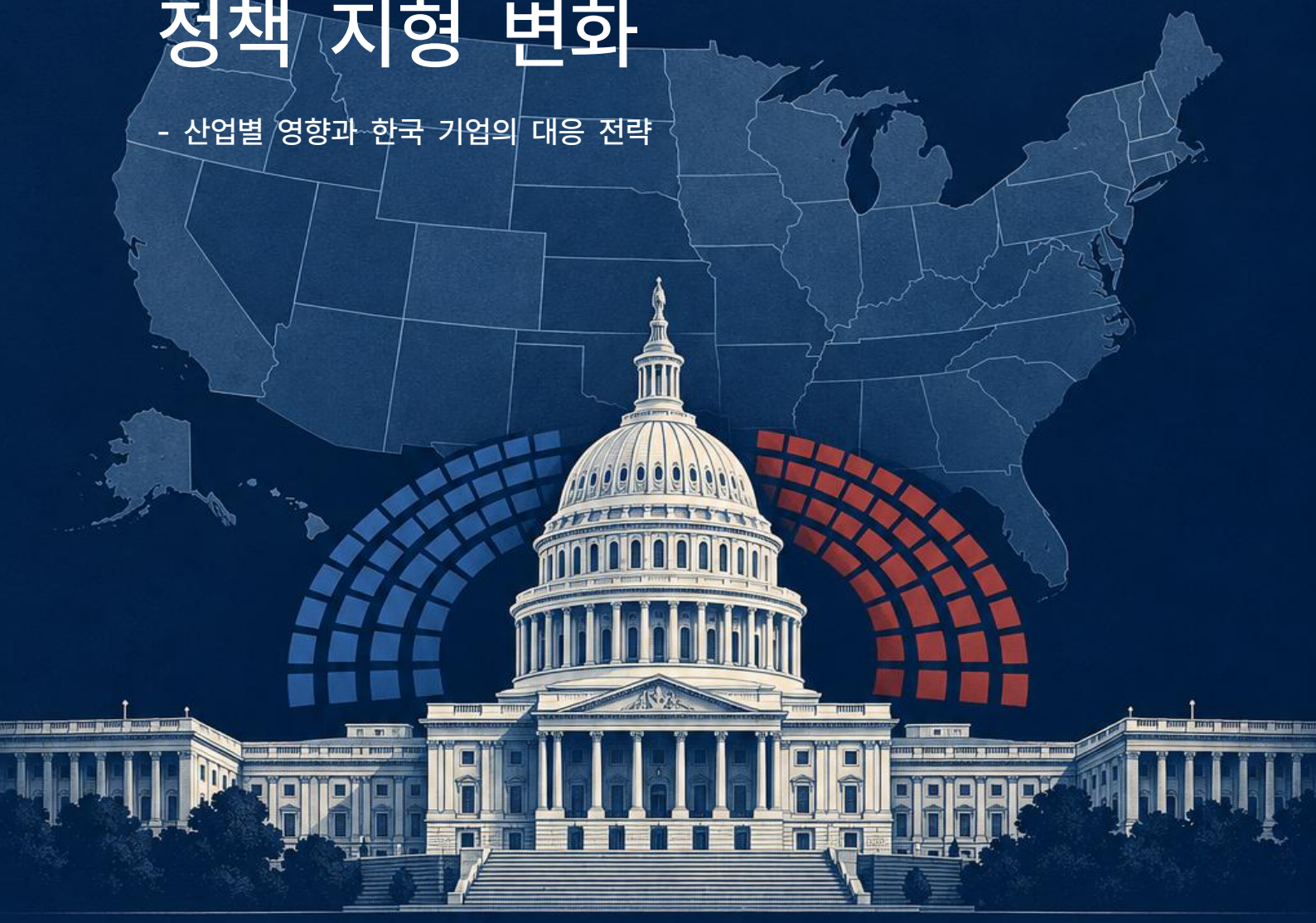
법무법인(유) 율촌

[심층 분석 | 종합 리포트]

2026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책 지형 변화

- 산업별 영향과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2026 년 11 월 5 일

법무법인(유) 율촌

※ 11 월 4 일 발송한 요약본에 이어, 주요 정책 변화와 산업별 영향 및 기업의 대응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종합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목차

I. 미국 중간선거 결과 4

II. 미국 의회시스템과 과거 중간선거 이후 정책 변화 5

1. 미국의 의회시스템 5

2. 선거 이후 정책 변화 사례 7

III. 미국 중간선거 결과 평가 11

Q1.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은 입법 주도권을 확보했나? 11

Q2.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11

Q3. 양원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압박 카드는? 12

Q4. 중간선거 결과가 한국의 대미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13

Q5. 중간선거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될까? 13

Q6. 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36개 주의 주지사 선거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14

IV. 국내 산업·기업 영향 15

1. 통상·관세 정책 15

① 현행 정책 및 법적 근거 15

② 선거 결과의 정책 영향과 변화 전망 17

③ 국내 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19

2. 에너지·전력 22

3. 자동차·배터리 32

4. 반도체 및 첨단제조 42

5. AI·빅테크 48

6. 對중국 경제안보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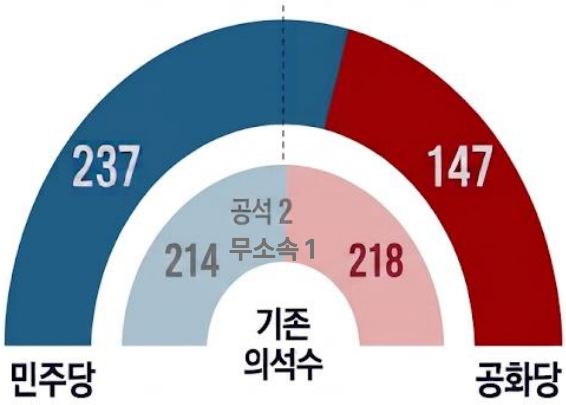
Executive Summary

중간선거 결과와 원인	▪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과반을 점유하며 입법 주도권을 탈환 ▪ 관세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이민 정책에 대한 여론 악화 등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중간선거 참패로 이어짐
산업별 영향	1. 통상·관세 정책 ▪ 기존 232조·301조 관세는 위임법률과 대통령 포고에 근거하므로 의회 구도 변화만으로 즉시 변경되지 않음 ▪ 민주당 의회는 관세권한 회수 입법과 청문·감독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나, 상원 토론종결 요건과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관세 수준을 직접 낮추기는 어려울 수 있음 2. 에너지·전력 ▪ 의회 구도 변화에 따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복원과 송전망 확충, 대형 전력수요자의 비용부담 기준 조정 논의가 확대될 수 있으나, 상원 의결 요건과 대통령 거부권 등으로 실제 정책 전환은 제한될 전망 ▪ 우리 기업은 세액공제 적용 시한을 점검하고, 원전·알래스카 LNG 등 장기 사업의 인허가 일정과 계약 조건을 검토하며, 전력망 사업에서는 계통접속 시점과 보강 비용 분담을 살필 필요가 있음 3. 자동차·배터리 ▪ 기존의 우려국가 배제 및 현지 생산 기조에 대응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세액공제 요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민주당의 의회 영향력 확대에 따른 ESS·전력 인프라 투자 및 예산 논의를 주시하는 한편, 대미 투자·현지 고용 실적 관리와 의회 조사·감독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함 4. 반도체 및 첨단제조 ▪ 미국 내 생산 지원과 대중(對中) 기술통제는 초당적 이슈로 행정부와 의회의 대립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우리 기업은 미국내 반도체 제조공장 설립에 따른 세제 혜택(48D) 연장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국에 위치한 공장의 수출 통제와 관련한 의회 조사 및 규제 대응이 필요 5. AI·빅테크 ▪ 트럼프 대통령의 AI 자율규제·산업육성 정책과 민주당 의회의 규제 강화 기조의 충돌로 단기간내 연방차원의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결국 연방의 자율규제-의회의 입법시도-주별 규제가 병존하는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성을 위해 의회의 조사·소환이 관련 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6. 對중국 경제안보 ▪ 미국 상하원의 초당적 의제인 對중국 경제안보 정책은 속도와 범위, 집행방식이 핵심이며, 기업들은 이에 따른 규제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 ▪ 우리 기업은 산업별 공급망 공백의 단기적인 반사이익에서 나아가, 장기적으로 미국 기준에 부합하는 공급망 투명성, 거래상대방 검증, 기술 및 투자 통제 역량을 경쟁우위로 전환하는 대응이 필요

Ⅰ 미국 중간선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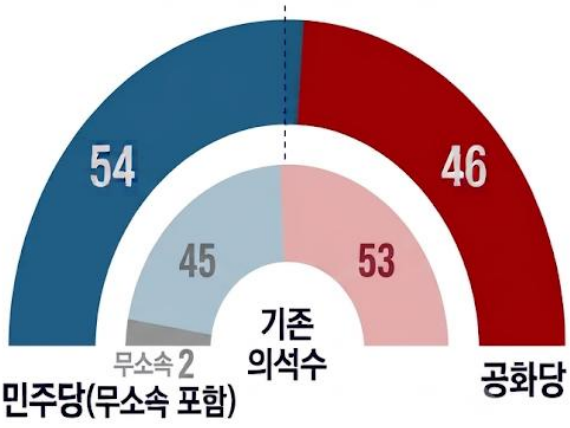
[하원]

과반 218석



[상원]

과반 51석 (동석인 경우 부통령이 캐스팅보트)



※ 2026 중간선거 결과는 11월 5일 08:00 확정 기준

①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도와 생활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정권 견제 심리로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탈환

- Washington Post·ABC News·Ipsos 공동 여론조사(2026.10.9~13.)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 부정 평가는 66%로 나타나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의 두 배에 달함
-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70%, 물가 상승 대응은 75%, 생활비 대응은 77%로 나타나 경제·민생 분야에 대한 불만이 두드러짐
- 미국 성인의 59%는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민주당 주도 의회를 선호한 반면,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할 공화당 주도 의회를 선호한 비율은 35%로 나타나 정권 지원보다 견제 요구가 우세함
- 하원 선거의 정당별 후보 지지율 역시 투표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기준 민주당 52%·공화당 44%로 민주당이 8%p 앞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견제 요구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져 민주당은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함

②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주요 경합 주에서 의석을 확보하며 다수당 지위 탈환

- 선거 전 상원은 공화당 53석·민주당 45석·무소속 2석(민주당 연대)으로 구성, 민주당은 다수당 지위 확보를 위해 순증 4석이 필요하였음
- 선거 결과 민주당은 오하이오, 텍사스, 캔자스, 아이오와, 메인, 미시건 주 등 주요 경합주에서 승리하며 최소 54석을 확정하여 다수당 지위를 탈환, 다만 상원의 필리버스터 조기 종결을 위한 60석에는 미치지 못하였음

II 미국 의회시스템과 과거 중간선거 이후 정책 변화

1. 미국의 의회시스템

○ **상원Senate과 하원House 양원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며, 법률 제정에는 양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함**

– 50개 주의 2명씩 선출되는 상원은 주의 대표성이 보장되며, 주별 인구 비례로 435석의 의석을 배정하는 하원은 국민의 인구 비례대표 성격을 가짐

– 양원은 모두 법률 제·개정 권한이 있으며[1], 행정부 견제 방식, 조약 비준,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 공직자의 탄핵 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권한을 보유

– 특히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입을 늘리는 법안의 발의와, 연방 지출과 세금에 관한 법률 심의는 하원에 부여된 고유 권한으로, 하원은 이를 통해 정부의 구체적인 지출을 통제할 수 있음

< 의회별 고유 권한 >

구분	상원	하원
의원 수	100명 (50개 주별 2석)	435명 (인구 비례 대표)
임기/선거주기	6년 (2년마다 약 3분의 1씩 선거)	2년 (전 의석)
의장	부통령 (실질 운영은 다수당 지도부 중심)	하원의장 (Speaker)
법안 발의	일반 법안 발의 가능	일반 법안 발의 가능. 특히 세입 증대 법안은 헌법에 따라 하원에 우선권이 있음
고위직 인준	대통령 지명 인사의 인준 (인사청문회)	일반적 인준권 없음
조약	상원의 동의 필요	일반적 조약 비준권 없음
탄핵	하원의 탄핵소추를 심판 (2/3 이상 의결)	탄핵소추 의결

○ **일반 법안의 통과는 통상 단순 과반이나, 필리버스터 종결, 대통령 거부권 무효화 등에는 서로 다른 의결 기준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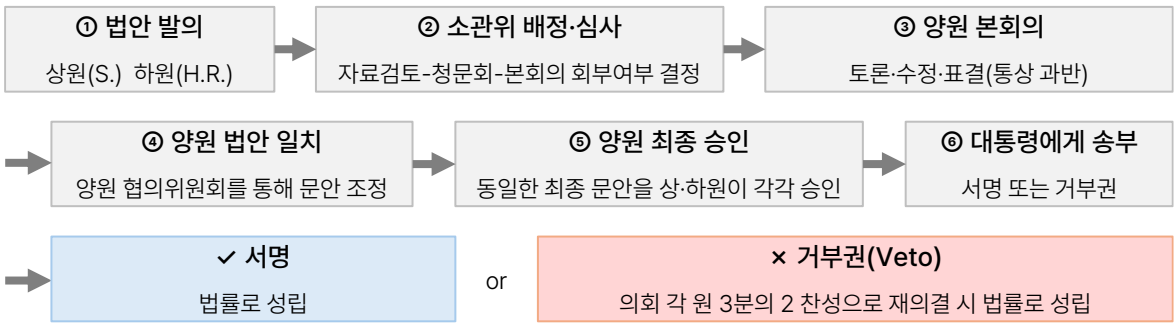
– 일반적인 연방법 제정 절차는 발의 → 소관위 심사 → 상·하원 본회의 토론·수정·표결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송부되며, 본회의 표결 원칙은 단순 과반을 따름

– 다만, 특정 상황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데, 상원의 경우 필리버스터 조기 종결을 위해서는 60석 이상, 조약 동의 및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 공직자 탄핵 심판(유죄판결)에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양원 모두 3분의 2 이상 의석이 필요

[1] 양원이 서로 다른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안을 수용하거나 양원 협의위원회(conference committee)가 합의안을 마련하여 양원에서 다시 승인받아야 함

– 특히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법안을 받은 뒤 일요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반환(서명 또는 거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의회가 휴회하여 반환이 불가한 경우에는 헌법상 포켓거부권(pocket veto)이 인정되고, 이 경우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무효화가 불가하여 입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

< 미국의 입법 절차 >



– 상원의 경우 법안 심의 토론에서 필리버스터가 법안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세금·연방지출·연방 부채한도 등과 관련된 법안에 '예산조정절차(budget reconciliation)'를 적용하는 경우 필리버스터가 제한됨

– 따라서 야당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조기종결 필요 의석인 60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다수당이 되면 예산조정절차를 활용해 세금 감면, 특정 지출 변경 등을 추진할 수 있음[2]

[2] 예산조정절차를 적용한 법안이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거부권 무효화 조건(양원 3분의2 동의) 필요

2. 선거 이후 정책 변화 사례

< 1990년 이후 미국 중간선거 결과 >

■ **1990년 이후 9차례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양원 다수당을 유지한 사례는 2002년이 유일하며, 야당이 양원을 차지한 사례는 5차례로 중간선거는 야당이 다소 우세한 경향이 있음**

✓ 여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사례는 2002년 108대 의회 선거가 유일한데, 당시 2001년 9.11 테러 직후 유권자의 안보 위기감과 애국심이 결집하면서 부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특이점이 있었음

✓ 야당이 양원 모두에서 과반을 차지한 사례는 5회(민주 3회, 공화 2회)로, 이는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나타나는 코트테일Coattail 효과[3]가 없고, 집권당에 대한 견제 필요성, 집권당 지지층의 낮은 투표율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중간선거에서는 대체로 야당이 우세하였음

선거연도	대통령	집권당	선거 후 상원 다수당	선거 후 하원 다수당	집권당 의석 증감 (하원/상원)	비고
1990	조지 H.W. 부시	공화당	민주당	민주당	-1 / -8	양원 야당
1994	빌 클린턴	민주당	공화당	공화당	-8 / -54	양원 야당
1998	빌 클린턴	민주당	공화당	공화당	0 / +5	양원 야당
2002	조지 W. 부시	공화당	공화당	공화당	+2 / +8	양원 여당(유일)
2006	조지 W. 부시	공화당	민주당	민주당	-6 / -30	양원 야당
2010	버락 오바마	민주당	민주당	공화당	-6 / -63	上 여, 下 야
2014	버락 오바마	민주당	공화당	공화당	-9 / -13	양원 야당
2018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공화당	민주당	+2 / -41	上 여, 下 야
2022	조 바이든	민주당	민주당	공화당	+1 / -9	上 여, 下 야

○ **과거 상·하원 모두 야당이 과반을 확보한 경우, 행정부는 예산·입법 장벽에 부딪치고,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법·행정 환경이 형성되었음**

– 1994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야당(공화당)은 클린턴 대통령의 예산·복지 정책에 제동을 걸었는데, 야당은 정부의 사회보장성 지출의 축소와 감세를 주장하며 정부의 예산안을 반대하여 결국 두 차례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함 (1995년 11월, 1995년 12월~1996년 1월)

– 복지분야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기존의 '아동부양가족보조(AFDC)' 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추진했으나, 공화당 의회가 '개인책임 및 노동기회 조정법(PRWORA)' 입법을 강행하여[4] 기존의 AFDC가 폐지되고 PRWORA를 근거로 하는 '한시적 빈곤 가정 지원제도(TANF)'로 대체됨

[3] Coattail Effect: 대통령 후보의 인기가 같은 정당의 하위 선거 후보들의 득표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정치적 현상

[4] 실제 클린턴 대통령은 PRWORA에 대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결국 1996년 수정안에 최종 서명

- 2006년 중간선거에서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예산 심의권을 무기로 부시 행정부가 바라지 않던 민생 입법을 예산안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압박, 결국 부시 대통령은 1997년 이후 10년 동안 동결되어 있던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5.15→$7.25로 단계적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해야 했음
- 즉, 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 정부가 추진하려던 정책이 야당의 기조에 따라 변경되었는데, 이는 대통령 정책의 포기 또는 폐기라기보다는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의회와의 타협과 협치 압력이 강해져 결국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야당이 양원을 장악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의석(3분의 2)을 확보하지 못하면 최종 입법에 실패**

- 2006년 부시 대통령 2기에 시행된 중간선거에서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라크 전쟁 정책 변경과 철군을 요구하는 공동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의식한 야당내 이탈표가 발생하며 48대 50으로 부결되었음
- 또한 이라크 전쟁 관련 예산에도 의회는 이라크 정부의 정치적 진전 기준, 병력 운용 등과 관련된 조건을 담은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부시 대통령은 일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대통령이 추진하던 전쟁 관련 정책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었음
- 국내 정책에서도 민주당은 기존 '지역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SCHIP)'의 가입 범위와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부시 대통령의 2차례 거부권에 막혀 입법되지 못하고 결국 SCHIP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축소된 임시법안을 통과시켰음
- 결국 야당의 양원 장악이 정책 전환의 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의석(3분의 2)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정책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었음

○ **야당은 하원 장악만으로도 ▲예산·세입법안 우선권 ▲행정부 조사권 및 소환장 발부권 ▲탄핵 소추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여당과 첨예하게 대립함**

[예산·세입 법안의 우선권 활용]

- 미국 헌법상 모든 세입 및 예산 관련 법안은 반드시 하원에서 먼저 발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원을 장악한 야당은 이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들의 정책을 수용하도록 대통령에게 예산안의 양보를 요구함
- 2010년 중간선거로 하원을 탈환한 공화당은 2011년 오바마 정부의 국가 부채 한도 증액을 거부하며 오바마케어 예산 삭감과 대규모 재정 지출 감축을 요구, 결국 양측은 향후 재량 지출 상한과 자동 예산 삭감 장치인 '시퀘스터(sequester)' 도입, 적자 감축을 위한 초당적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에 합의
- 오바마 정부가 중장기 재정지출에 대한 제약을 수용하면서 야당은 재정긴축을 핵심 의제로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최종 입법에는 정부와 상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타협안이 채택된 한계가 있음

[행정부 조사권 및 소환장 발부권]

- 하원을 장악한 야당이 행정부 강제 조사와 증인 소환장 발부를 통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면서 정쟁이 심화되었음
- 2006년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의 상임위원장을 독점한 야당(민주당)은 부시 행정부의 민간인 불법도청 문제, 연방검사의 정치적 파면, 허리케인 카트리나 늑장 대응, 전쟁 비용 오남용 등에 대해 다수의 청문회와 소환장을 발부, 이 과정에서 앨베르토 곤잘레스 법무장관 등 정권 실세들이 사퇴함
- 2018년 트럼프 1기에 시행된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을 점유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아동분리에 대해 국토안보부 장관, 법무부 장관에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정부·여당과 야당의 정쟁이 심화되었음
- 2022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야당(공화당)은 입법을 통한 정책 변화보다는 하원 상임위를 동원하여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비리 의혹, 남부 국경 난민사태, 아프가니스탄 철수 실패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 이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동력이 분산되고 정부의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겪어야 했음

[대통령 탄핵소추권]

-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원조 자금을 조건으로 당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였던 조 바이든과 아들의 부패 연루 의혹을 수사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폭로에 대해, 하원 법사위는 탄핵 절차를 진행했고 2019년 12월 18일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킴
- 탄핵 심판권을 가진 상원을 여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탄핵은 기각되었으나, 탄핵소추의결 과정에서 다수의 청문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과 외교 라인을 흔들었음

○ **양원의 여소야대 형국에서도 ▲국가안보 ▲제도 개혁 ▲재정지출 ▲인프라·R&D 등 정치적 부담이 적은 분야에서는 초당적(bipartisan) 합의가 이루어짐**

[외교 및 국가안보]

- 미국 정계에는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국익에 관련된 사안에서는 여야가 이해관계를 제쳐두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관례[5]가 있어, 국가적 위기나 중요한 외교 사안에서는 초당적인 협조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음

✓ **2007년 NATO 확장 및 안보 법안 (부시 행정부 – 민주당 양원)**
- 이라크 전쟁으로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중에도, 동유럽 국가들의 NATO 가입을 지원하는 법안과, 관련 국방예산안(NDAA)은 상·하원 모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

✓ **1990년대 후반 무역협정 및 외교정책 (클린턴 행정부 – 공화당 양원)**
- 클린턴 대통령과 깅그리치의 공화당 의회는 WTO 출범 승인과 자유무역 확대를 초당적으로 추진

[5] "Politics stops at the water's edge." (Arthur Vandenberg, 1948)

[국가 제도 개혁]

– 기존 제도가 너무 낡아 유권자의 불만이 팽배한 이슈는 정치적 부담이 적고 이념에 따른 찬반 논쟁이 없는 분야로, 양당은 실용주의적 타협을 선택

✓ **2015년 교육법 개혁: '모든 학생 성공법(ESSA)' (오바마 행정부 – 공화당 양원)**
- 2014년 중간선거에서 양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조지 W.부시 대통령 시절 제정된 초·중등교육법(No Child Left Behind)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ESSA(Every Student Succeeds Act)를 초당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진보와 보수진영 모두에게 환영받음

✓ **2015년 의료수가 제도(MACRA) 개혁 (오바마 행정부 – 공화당 양원)**
- 매년 임시방편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던 낡은 노인 의료보험(Medicare) 의사 지불 시스템(Doc Fix)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법안을 공화당 하원 지도부와 오바마 행정부가 합작하여 통과시킴

[재정지출 조정 및 연방정부 셧다운 방지]

– 대통령과 야당 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다가도 연방정부가 문을 닫으면 양쪽 모두 표를 잃는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할 때 대통령과 야당은 초당적으로 타협하여 위기에 대응하였음

✓ **1997년 균형예산법(Balanced Budget Act) (클린턴 정부 – 공화당 양원)**
- 1995년~1996년 두 차례의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유권자들의 비판을 받은 클린턴 정부와 공화당은 1997년 예산 수립 당시 정부가 공화당의 요구대로 감세와 지출 동결을 수용하는 대신, 대통령의 요구였던 저소득층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SCHIP) 신설을 예산에 반영, 재정 흑자를 달성함

✓ **2015년 초당적 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of 2015) (오바마 행정부 – 공화당 양원)**
- 존 베이너 하원의장 사임 직후 공화당 의회와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 예산 삭감의 폭을 완화하고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2년짜리 예산안에 전격 합의하여 통과시킴

[인프라·과학기술 지원 및 범죄·사법개혁 등]

– 이념 논란이 없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R&D 및 기초과학분야는 여야간 합의가 수월했음

✓ **2015년 연방고속도로법(FAST Act) (오바마 행정부 – 공화당 양원)**
- 2009년 이후 재원 부족으로 단기 연장만 계속되던 연방 도로 및 대중교통 인프라 예산법안을 공화당 양원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가 합의하여 5년 장기 법안으로 통과시킴

✓ **국립보건원(NIH) 및 과학 연구 예산 증액 (오바마 행정부 – 공화당 양원)**
- 오바마 2기 후반 공화당 의회는 대통령과의 대립 중에도 암 치료 연구 및 바이오 의학 기술 투자를 위한 NIH 예산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매년 대폭 증액함

< 양원 여소야대 형국에서 초당적 합의 가능 조건 >

양비론의 위험성	이념적 논란이 적은 분야	州정부 권한이양 개혁
연방정부 셧다운, 국가 부채 위기 등 타협하지 않으면 양당 모두 유권자에게 심판받는 사안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 연구지원, 국방 및 안보 분야 등 초당적 협력 필요 분야	연방정부의 통제를 줄이고 각 州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교육·복지 등과 관련한 개혁

III 미국 중간선거 결과 평가

Q1.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은 입법 주도권을 확보했나?

금번 중간선거를 통해 양원에서 과반을 점유한 민주당은 '입법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완전한 '입법권'을 확보했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있으나,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상·하원의 의결과 대통령의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상원의 경우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금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의 과반을 확보하여 다수당이 되었지만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의석(60 석)과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의석(양원 각 3 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하여, 법안 처리를 위해 공화당과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특정 분야에서 여당인 공화당과 법안 내용에 합의하거나 공동 발의를 추진하여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려 할 수 있습니다[6]. 다만,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완전히 무효화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입법 과정에서 대통령과 의회의 대치는 심화되고, 연방 예산 관련 입법 과정에서는 행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2.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지금까지 공개된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발언, 행정명령 등을 종합해보면 ① 관세·무역정책 ② 감세 정책 ③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 등이 가장 먼저 충돌할 정책 분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적인 성과임을 강조하는 분야로, 민주당의 주요 공격 포인트인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관세 분야: 현재 민주당은 관세를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관세를 철회하는 정책을 당의 과제로 공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단순히 무역 정책이라기보다 우방국과의 협상 수단으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이용하려는 상대국에 무역 압력을 가하기 위한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에 서명한다는 것은 향후 무역협상에서 가장 위력적인 협상 무기를 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관세 정책은 제조업 생산기지 re-shoring 유도, 국경 문제와 관련한 상대국 압박, AI·반도체 등 국가 안보와 연관된 첨단기술 보호 등 트럼프 경제·외교·안보 전략과도 연결되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6]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파병된 미군의 철수·감축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상·하원이 모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여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정식 법률로 발효됨

② 감세 정책: 민주당은 2025 년 제정된 OBBBA(One Big Beautiful Bil Act)가 고소득층에 유리한 세제를 제공하는 반면, 메디케이드, 식량지원 프로그램 등에 재정 지원을 축소했다고 비판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OBBBA 의 감세 혜택을 자신의 대표적인 성과로 내세우며 오히려 해당 법률의 감세 혜택 부분을 별도 입법을 통해 영구화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의회가 기존 감세의 폐지 또는 고소득층·대기업 증세 등을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 에너지 관련 정책은 청정에너지 중심의 민주당과 화석연료 확대 기조의 공화당의 대립이 뚜렷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할 수 있는 입법 과제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확대, 화석연료 개발 및 탄소배출 관련 규제 강화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간 발표된 행정명령[7], OBBBA 에 포함된 석유·가스 개발 관련 조항 및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종료·축소 등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화석연료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기후정책을 민주당 정부 시절로 복원하는 입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력 공급 안정화, 원자력발전 관련 법안,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대응 등은 공화당 일부에서도 지지하는 영역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 가능성은 어느정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이민·국경 통제 완화, 대통령의 군사 행동권 축소 등을 포함한 법안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예상됩니다.

Q3. 양원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압박 카드는?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높이기 위해 의회의 조사·소환요구권과 청문회를 활용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 및 계약 과정, 대통령 주변 기업과의 거래, 행정부-민간기업간 관계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및 가족과 연결된 기업 및 금융 거래, 국토안보부 계약과 정부 조달, 트럼프 행정부와 기업·기부자[8] 간 관계, 해외 국부펀드 투자와 대통령 주변 사업체의 관계 등이 언론에 거론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 또는 여당인 공화당에 친화적인 기업, 정부 조달에 참여했던 기업 등이 조사·소환 대상[9]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장관, 대사, 연방 판사 등 대통령이 지명하는 주요 인사에 대해 상원의 인준권을 활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주요 정책 집행 책임자의 인준을 지연 또는 부결하여 인사상 부담을 주거나, 후보자의 자격 검증 과정에서 물가, 이민 등 여론에 민감한 입장을 확인하여 비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대통령의 주변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7]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EO 14260 'Protecting American Energy from State Overreach'을 발표하여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국내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생산을 장려하고, 기후변화 관련 정책,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 국내 에너지 생산을 제약한다고 판단되는 주정부 정책에 연방정부가 대응하도록 지시

[8] 트럼프 대통령 2기에 개최되어 정치적 논란이 되었던 행사 기부자 (취임식,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 등)

[9] 언론(reuters)에는 애플, 알파벳, 테슬라, 팔란티어, 블랙스톤, 블랙록 등이 거론됨

Q4. 중간선거 결과가 한국의 대미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트럼프 정부의 해외 투자 유치에 대해 그간 민주당은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특히 1500 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과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 산업 경쟁력 및 공급망에 기여하는 한미 통상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국 내 전략산업의 생산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법안[10]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투자 규모와 조건을 결정하는 권한이 백악관과 행정부에 집중되어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부가 한국 의회에 투자 이행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투자 메커니즘이 불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한미동맹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는 법안 발의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데, 2026년 6월 11일 상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외국인 투자 감독과 투자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의 독립 기관을 신설하고 대미투자 이행의 감독 주체를 의회로 가져오기 위한 법안인 '외국인 투자 심사·이행 감독법(FIRM Commitment Act[11])'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금번 선거에서 양원을 장악했지만, 위 법이 새로운 의회에서 다시 발의되더라도 상원의 필리버스터,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최종 입법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입법'보다는 의회의 조사·소환요구·청문회 권한을 이용하여 정부를 압박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 이행 과정의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정부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의회가 대미투자에 관여하는 우리 기업[12]을 대상으로 투자 약정 및 투자 현황, 고용 등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 소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상시 준비하는 한편,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사전 검토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위 법이 새로운 감독 기구의 신설이 아닌 기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되고, 별도의 법안 입법이 아닌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되어 의회를 통과한다면 최종 입법 가능성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본 법안이 최종 입법된다면 개별 투자계약상 약정 내용의 이행, 실제 고용 창출 효과 등에 대해 대미투자에 참여한 우리 기업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5. 중간선거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될까?

최근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1%(Ipsos/Reuters, 2026.10.16~19 일 조사)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중간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둘러싼 백악관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한편, 일부 참모진이 '레임덕 행정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10] Make More in America Act of 2026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Chuck Schumer 대표발의, 상원 위원회 회부 중)

[11] Foreign Investment Review Monitoring and Commitment Tracking Oversight Board Act (양원 위원회 회부 중)

[12] 대미투자 참여 기업과 더불어 2025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건국 250주년 행사 등에 참여 또는 후원한 기업(H사, S사, L사 등)은 민주당 의회의 조사·소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특성상, 레임덕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정치인과 달리 선거 결과나 여론과 무관하게 행정명령 등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정치적 통제력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AGA로 대변되는 공화당 지지층에 독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간선거 패배 이후 오히려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

레임덕이 크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의 대치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은 의회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동시에 행정명령과 관세·국경통제·외교안보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활용하여 오히려 이전보다 강력하게 국정동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서 의회는 조사권을 확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사법 리스크, 정책 집행 등에 대한 조사로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예산안과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을 연계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수정을 압박하며 행정부 셧다운 위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Q6. 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36개 주의 주지사 선거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36 개주의 주지사 선거도 실시되었습니다. 금번 선거 결과 민주당이 22 개 주에서 당선되며 4 개 주의 주지사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주지사의 당적은 기본적으로 각 당의 정책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 투자 심사, 통상협정 이행 등은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이와 관련된 주지사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주지사는 주정부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관련 주 법에 따라 기업 부지의 제공, 환경 관련 영향평가 및 인허가, 지방세 감면 및 보조금 제공 등 행정적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민주당 주지사는 노동자 보호, 환경 및 청정에너지 중시, 기업 책임 관련 정책 추진 등의 특징이 있고, 공화당 주지사는 기업 감세, 규제 완화, 전통적인 에너지 및 제조업 유치 정책 친화적으로 분류되지만, 이러한 차이를 우리 기업에 대한 유불리로 직접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당선된 주지사의 당적보다 해당 기업의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정책이 적용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배터리·전기차·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은 청정에너지 지원제도와 환경정책을, 반도체·AI·데이터센터 기업은 전력 공급과 인허가 속도, 자동차 및 일반 제조기업은 인건비와 물류·공급망 여건과 관련한 정책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국내 산업·기업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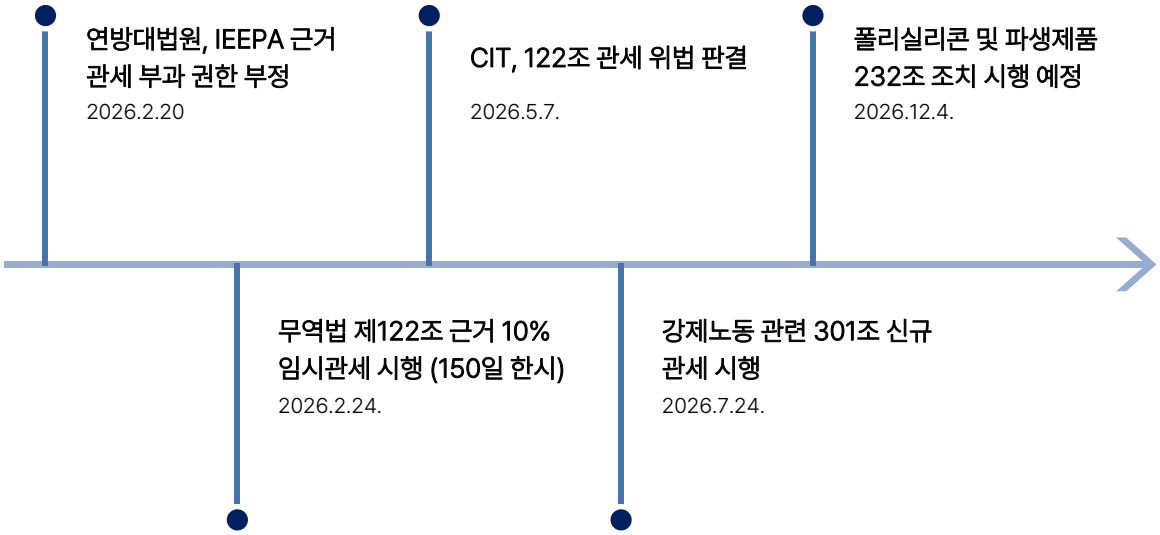
1. 통상·관세 정책

① 현행 정책 및 법적 근거

○ **2026년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펜타닐 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임시관세를 거쳐 301조 국가별 관세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관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Learning Resources v. Trump 사건에서 6대 3으로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관세 부과는 헌법상 의회의 과세권에 속한다고 명시함
- 행정부가 IEEPA 판결 당일 무역법 122조에 근거하여 최장 150일간(2026. 2. 24.~7. 24.) 10% 글로벌 임시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은 5월 7일 무역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가 해당 조항의 발동 요건인 '대규모·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 판결을 내렸으나, 구제 범위가 원고 3인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이 6월 11일 항소심 종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함에 따라 일반 수입자의 관세 환급 여부는 향후 항소심의 판단과 후속 집행 조치에 달려 있음
- 122조 관세가 2026년 7월 24일 만료되자 미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는 강제노동 수입금지 미이행을 이유로 60개 경제권에 301조 관세(10% 또는 12.5%)를 부과했으며, 한국에는 MFN 세율과 301조 추가관세의 합이 12.5%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기본세율이 12.5% 미만인 품목에만 그 차액만큼 추가관세가 부과됨
- 이와 별도로 철강·알루미늄(50%), 자동차·부품(한국산은 15%), 일부 첨단 반도체(25%) 등 품목별 232조 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폴리실리콘·파생제품 관세도 2026년 1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며, 한·미 합의에 따라 향후 반도체 관세에는 한국 이상의 반도체 교역규모를 가진 국가와 체결되는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되기로 함

< 트럼프 2기 재임 중 주요 관세 타임라인 >



< 현행 미국 주요 관세 조치와 한국 적용 현황(2026.10. 기준) >

법적 근거	대상	주요 내용	한국 쟁점
IEEPA	전 세계(상호관세) 캐나다·멕시코·중국	▪ 2026.2.20. 연방대법원 무효 판결, 징수 중단	▪ 관세 환급 시스템(CAPE)을 통해 환급 진행 중 ※ 수입신고 명의자(Importer of Record, IOR)만 신청 가능 ▪ 최종 확정 건은 원고·집단소송 여부에 따라 환급권 보전 필요
무역법 122조	전 세계	▪ 10% 임시관세 (2026.2.24.~7.24.) 만료, CIT 위법 판결 (2026.5.7.)	▪ 환급 명령은 항소심 진행 중 집행정지 상태이며, 환급 가능성은 항소심 결과 등에 좌우됨[13] ▪ 소송 비당사자인 수입자(한국 기업이 수입자인 경우 포함)는 환급을 위한 별도 절차 검토 필요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60개 경제권 (미국 수입의 99.4%)	▪ 10% 또는 12.5% 추가관세(2026.7.24. 시행), 세율 상한·기한 없음	▪ MFN 12.5% 미만: 합계 12.5%가 되도록 추가 ▪ MFN 12.5% 이상: 추가관세 없음 ▪ USTR 최종 조치상 232조 대상 품목은 301조 관세에서 제외되므로, HTS 코드별로 기본세율, 301조 추가분, 232조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 실효 관세를 산정해야 함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알루미늄·구리, 자동차·부품, 반도체, 의약품, 폴리실리콘 등	▪ 품목별 국가안보 관세, 상무부 조사 후 대통령 포고	▪ 자동차·부품: 한국산은 MFN 세율을 포함한 총 관세율 15% 상한 ▪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50% ▪ 폴리실리콘·지정 파생제품: 최저수입가격 제도 적용 및 관세 부과(한국산은 기본관세와 232조 관세 합계 15% 상한, 2026.12.4. 시행 예정)

[13] 미국 CIT는 2026.5.7. 무역법 제122조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특정 원고에 한해 환급을 명령했으나, 항소법원의 집행정지로 환급은 항소심 결과에 좌우됨(Troutman Pepper Locke, 2026.10.12.)

법적 근거	대상	주요 내용	한국 쟁점
관세법 338조	캐나다 일부 상품	▪ 캐나다 부속서 지정 품목에 50% 관세 적용(2026.8.22.~)	▪ USMCA 원산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 ▪ 캐나다산 원산지 부품·소재 조달 점검
대러 제재법 (P.L.119-111)	요건을 충족하는 러시아 원유·가스 주요 수입국 등	▪ 2026.9.18. 제재 대상국 지정 시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	▪ 대상국 지정 여부·예외·시행조치 확인 필요 ▪ 한국에 자동 적용되지 않음

※ 출처: 연방대법원, CIT, USTR, CBP, CFR 종합

○ **현행 관세는 232조·301조 등 개별 위임법률에 근거하므로, 법원은 위임 범위와 절차 준수 여부만 심사하고 의회가 직접 무효화하는 것은 어려운 구조**

– 232조는 상무부의 안보 영향 조사를 전제로 하나 대통령의 조치 재량이 넓고, 의회의 불승인 결의 절차는 석유 수입 조정 조치에 한정되어 있음

– 301조는 조사·공청회 등 절차가 필요하지만 세율 상한과 시한이 없고 과거 법원에서 적법성이 인정된 바 있어 행정부가 IEEPA 및 무역법 122조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한편 한·미 관세 혜택 역시 의회 입법이 아닌 포고·관보 고시 등 행정조치에 근거하므로, 한국이 투자를 이행하더라도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재조정할 여지는 남아 있음**

– 한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2026.6.18. 시행)으로 대미(對美)투자의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함

– 그러나 미국 측 관세 혜택은 의회 입법이 아닌 행정조치로 부여되므로, 국내 이행체계가 갖춰진 뒤에도 투자 집행 지연이나 사업 선정을 둘러싼 이견이 관세 재조정 압력의 명분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② 선거 결과의 정책 영향과 변화 전망

○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가 소비자 가격과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높인다고 비판해 왔으며,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부과를 제한하고 의회의 승인·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을 양원 다수당으로서 본격 추진할 가능성 존재**

– 2007년 민주당이 주도한 의회 지도부와 부시 행정부 간 초당적 '5월 10일 합의'에 따른 노동·환경 기준은 한·미 FTA에 반영되는 등 과거 야당은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활용해 이행법안 승인 과정에서 통상협정 내용의 수정을 이끌어냈음

– 2019년에는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수정 요구를 반영해 노동 집행 강화 등을 담은 USMCA 개정의정서가 12월 10일 서명됐으며, 같은 달 19일 하원에서 이행법안이 찬성 385표, 반대 41표로 통과된 바 있음

– 상원은 2025년 10월 글로벌 관세의 근거가 된 국가비상사태 종료 결의안(S.J.Res. 88)을 51대 47로 통과시켰으며, 공화당 의원 4명(Susan Collins, Mitch McConnell, Lisa Murkowski, Rand Paul)이 찬성하는 등 관세에 대한 공화당 내 이견도 존재함

– Ron Wyden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2026년 7월 22일 「Congressional Trade Powers Reform Act of 2026」(S.5081)을 발의해 무역법 제122조(국제수지 문제 대응) 및 1930년 관세법 제338조(외국의 차별적 통상관행 대응)에 따른 관세 권한을 폐지하고,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안보 관세), 무역법 제301조(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및 제201조(수입 급증에 따른 세이프가드)에 따른 관세 조치가 의회 승인을 받아야 시행될 수 있도록 제안함

– 초당적 「Trade Review Act of 2025」(S.1272)는 신규 관세를 48시간 내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내 의회 승인이 없으면 효력을 잃도록 규정했으나, 두 법안 모두 계류 중으로 현행 관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119대 의회 종료(2027.1.3.) 시 폐기되므로 2027년 120대 의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2026년 9월 18일 제정된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대러 제재법, P.L.119-111)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주요 수입국 등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법으로, 상원 표결(86대 11)에서 민주당 36명이 찬성해 안보 목적의 관세 위임에는 민주당 일부도 협조했음을 보여주었으나, 대통령이 10월 16일 국익을 이유로 해당 관세 조항의 적용을 면제하면서 위임된 관세권한의 발동 여부는 여전히 대통령 재량에 달려 있음

< 민주당(야당)의 관세·통상 관련 주요 입장과 입법 동향 >

구분	주요 내용	현황	시사점
S.J.Res. 88 (비상사태 종료)	글로벌 관세 근거 비상사태 종료	▪ 상원 통과(51-47), 하원 미처리 ▪ IEEPA 판결로 실익 소멸	▪ 공화당 일부도 찬성
Congressional Trade Powers Reform Act of 2026 (S.5081)	122·338조 권한 폐지, 232·301조 등 조치에 의회 승인 요건 도입, 무역협정의 법률 승인 의무화, USTR 대통령실 외부 이전	▪ 2026.7.22. 발의 (Wyden) ▪ 상원 재무위원회 계류 중(120대 의회 재발의 필요)	▪ 민주당 양원 장악으로 관세권한 회수 논의의 기준안이 될 수 있음(거부권 장벽 존재)
Trade Review Act of 2025 (S.1272)	신규 관세 48시간 내 의회 통보, 60일 내 승인 없으면 효력 상실	▪ 초당적 발의 (Grassley·Cantwell), 거부권 위협(120대 의회 재발의 필요)	▪ 분점정부에서 협상 카드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 (H.R.5334)	대(對)러 제재법으로, 러시아산 원유·가스 수입 상위국 및 제재 회피 조력국에 최대 100% 관세 부과(예외·면제 규정 있음)	▪ P.L.119-111 ▪ 2026.9.18. 제정	▪ 안보 목적 관세에는 초당적 협조 ▪ 대상국 지정·발동 요건 별도 확인

※ 출처: 미 상원 재무위원회, S.5081 발의 원문, H.R.5334(P.L.119-111) 법률 원문 종합

○ **[미국 정치제도의 특수성] 민주당은 양원에서 과반을 확보했으나, 상원의 필리버스터와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부담으로 의회의 조사·소환권을 통한 감독과 관세 권한의 추가 위임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음**

-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해 관세 축소 결의·법안의 양원 통과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2019년 국가비상사태 종료 결의 사례와 같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 정족수 확보는 어려움
- 따라서 민주당은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청문, 자료제출 요구·소환, 관세 수입과 환급 집행에 대한 감독을 통해 관세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122조 관세 연장이나 러시아 제재법형 관세 위임과 같은 신규 권한 부여 차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의회검토법(CRA)은 부처 규칙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통령 포고에 따른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처 규칙에 대한 불승인 결의도 대통령 서명 또는 거부권 재의결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의회의 규칙 심사만으로 관세·통상 정책을 전환하기는 어려우며, 청문·자료 요구·세출 협상이 주요 견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선거 후 신(新)의회 출범(2027.1.) 전까지는 현 공화당 다수 의회가 유지되므로, 다수당 교체 전 공화당이 우선순위 법안 처리를 서두를 가능성이 있어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세제 연장 등 계류 법안에 통상·산업 관련 조항이 함께 반영될 가능성도 존재

③ 국내 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 **기존 232조·301조 관세는 대통령 포고와 행정절차에 따라 유지되므로 선거 직후 즉시 변경이 어렵지만, ▲관세권한 제한 법안 ▲통상협정 승인 ▲NDAA·세제 법안 등은 신의회 구성에 따라 2026년 말부터 2027년 초 사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232조·301조 중심의 관세 구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변화는 생활비 부담이 큰 소비재 관세의 선별 완화와 양자 합의 조정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음
- 행정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멕시코와 중간 양자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나 철강·자동차 관세를 둘러싼 이견으로 타결이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고, 미·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양국이 각각 약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하는 등 전면적 완화보다는 선별적 관세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통상 의제별 추진 가능성 전망 >

의제	추진 가능성
232조·301조 관세 유지	**높음.** 기존 권한·축소 입법에 거부권 장벽
신규 품목·국가 관세 추가	**중간.** 양원 감독·정치적 부담
관세 위임권한 축소 입법	**양원 통과 가능.** 실제 입법화는 거부권 장벽
신규 관세권한 위임 입법	**낮음.** 양원 반대 시 차단 가능
양자 합의에 대한 감독·조건 부과	**중간~높음.** 양원 감독·입법 연계 시 협상력
소비재 관세 선별 완화	**높음.** 양원 중심 완화 요구

○ **이와 같은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국내 기업은 ▲품목별 실효관세 산정 ▲대미투자 이행 리스크와 계약·설비 반입 ▲의회 조사·평판 리스크 ▲북미 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품목별 실효관세 산정]** 한국에 적용되는 12.5%를 모든 품목의 총관세 상한으로 보거나 232조 관세와 301조 관세를 중복 적용 여부 확인 없이 단순히 더해 계산하면 실제 관세 부담을 잘못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HTS 코드별로 기본세율, 301조 추가분, 232조 대상 여부와 중복 적용 제외 규정을 함께 확인해 실효 관세를 산정해야 함

– **[대미투자 이행 리스크]** 대미(對美)투자 집행과 관세 혜택이 연계된 구조에서는 사업 선정이나 집행 지연이 관세 재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하원 다수당 교체로 투자 성과에 대한 청문·감독도 강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고용 실적과 일정 변경 사유를 문서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대미투자 계약·설비 반입]** 대미투자 사업의 개별 계약은 민간 개발사나 주(州)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상업적 계약이고 한·미 양해각서는 개별 기업에 직접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만큼 관세 인상이 계약상 법령 변경 조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그 위험·비용 부담 주체를 확인해야 하며, 공장 건설용 기계·설비도 대미 직접투자 인정 여부와 별개로 면제 규정이 없으면 철강·알루미늄 함유분에 232조 관세가 부과되므로 통관 지연을 막기 위해 반입 전 함유율 분석이 필요함

– **[의회 조사·평판 리스크]** 민주당의 양원 장악에 따른 의회 조사가 행정부의 권한 남용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더라도, 관세 혜택과 연계된 대미투자 합의 등 행정부 결정과 관련된 기업 역시 자료 제공 요청, 소환장(Subpoena) 발부,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상원 상임위원회의 별도 조사도 가능하며, 조사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가 언론·NGO의 추가 취재로 이어져 평판 리스크를 키울 수 있으므로 의회·정부에 제출하는 투자·고용 자료와 대외 공시, 이전가격 문서, 관세 신고가격 간 일관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북미 공급망]** 미국이 2026년 7월 1일 USMCA 공동검토에서 협정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USMCA는 2036년까지 효력을 유지하되 매년 공동검토를 거치는 체제로 바뀌었으며, 원산지 규정 강화 등 재협상 압력이 이어질 수 있음. 또한 캐나다 일부 상품에 대한 338조 관세(50%)는 USMCA 원산

지 요건을 충족해도 면제되지 않고 232조 관세에 더해 부과되며, 10월 23일 포고로 대상 품목이 조정되어 10월 30일부터 시행됨. 따라서 북미 거점 기업은 USMCA 특혜를 전제로 한 조달 구조를 재점검하고, 상품별 원산지와 포고 부속서상 HTS 대상 여부, 중복 제외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시사점

- 선거 후에도 232조·301조 중심의 관세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기업의 실제 부담은 품목별 기본세율과 적용 제외·중복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주당 의회는 기존 관세의 즉시 철회보다 신규 관세권한 위임 차단과 노동·원산지·투자 성과 감독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USMCA 원산지·노동 요건 이행과 대미투자의 투자·고용 성과를 청문·감독 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북미 생산거점을 둔 기업은 원산지·노동 요건 충족 근거를, 대미 투자 기업은 투자 집행, 고용 실적, 일정 변경 사유를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미 관세 혜택은 미국의 행정조치로 부여되어 투자 이행 지연이 관세 재조정의 명분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고용 성과와 집행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에 적용되는 12.5%의 세율은 총관세의 상한선이 아닌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산정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HTS 코드별 실효 관세를 정확히 산정하는 한편, 관세 환급 권리와 거래처 간 관세 및 환급금의 귀속 조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 민주당 의회의 청문·자료 요구는 행정부를 겨냥하더라도 관련 기업의 자료 제출과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출 자료 간 일관성과 계약상 관세 인상 위험의 배분(Change in Law) 조건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을 고려해야합니다.

2. 에너지·전력

① 현행 정책 및 법적 근거

○ **공화당은 미국 내 에너지 생산 확대와 규제 완화를 강조해 왔으며, 2024년 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OBBBA를 제정해 IRA의 에너지 지원제도를 분야별로 조정함**

– 2025년 7월 제정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Public Law 119-21)는 기존에 적용되던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45Y) 종료 시점을 앞당기는 한편, 연방 토지의 에너지 개발 확대 조치를 포함하며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OBBBA의 세액공제 조정은 분야별로 상이하며 ▲풍력·태양광에는 조기 종료 규정을 두고, ▲원자력·수소·CCS와 청정에너지 제조에는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함**

– **[금지외국기업 관련 제한]** 청정에너지(§45Q·§45U·§45X·§45Y·§45Z·§48E) 관련 세액공제에 금지외국기업(PFE)의 제한을 추가했으며, 특히 §45X·§45Y·§48E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은 금지외국기업의 물질적 지원 여부를 판정하는 요건을 포함하는 임시 지침을 발표

– **[태양광·풍력]** 2026년 7월 4일까지 착공하지 않은 태양광·풍력 시설이 2027년 12월 31일 이후에 가동될 경우 §45Y·§48E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48E 에너지저장기술에는 조기 종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원자력]**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5월 원전·첨단원자로 확대, 미국 에너지부(DOE) 원자로 시험 및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개혁을 위한 행정명령 4건을 발표해 인허가 절차 개편을 추진, 기존 원전 생산세액공제(§45U)를 2032년 말까지 유지하고, 원자력·지열·수력 등 적격 무배출 전원의 생산·투자세액공제(§45Y·§48E)는 2033년 말 이전 착공분까지 유지하며 이후 착공분은 2034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적격 지역 첨단원자로의 §45Y 생산세액공제 10% 가산 혜택 대상을 확대함

– **[수소·청정연료]** 청정수소 세액공제(§45V) 적용 대상의 착공 기한을 2032년 말에서 2027년 말로 앞당기고, 청정연료 세액공제(§45Z) 적용기간은 2029년까지 연장했으며, 2025년 12월 31일 이후 생산되는 연료의 원료를 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생산·재배한 것으로 제한하는 요건도 추가함

– **[CCS]** 탄소포집·저장세액공제(§45Q)를 유지하면서 2025년 7월 4일 이후 가동한 시설·설비에 대해 탄소 활용에 대한 공제액을 지중저장 수준으로 조정함

– **[청정에너지 부품 제조]** 미국 내 적격 청정에너지 부품 생산의 세액공제(§45X) 관련하여, OBBBA는 2027년 12월 31일 이후 생산·판매한 풍력 부품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 미국 연방세법(IRC)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주요 조항 >

세액공제	주요 공제 대상 및 적용·종료 기준
§45Y 청정전력 생산세액공제	▪ 적격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청정전력 - 태양광·풍력: 2026.7.4. 이후 착공한 시설이 2027.12.31. 이후 가동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그 외 발전시설: 2033년 착공분까지 100%, 2034년 75%, 2035년 50% 적용 후 2036년 이후 착공분은 공제 없음
§48E 청정전력 투자세액공제	▪ 적격 청정전력 발전시설 및 에너지저장기술에 대한 투자 - 태양광·풍력: 2026.7.4. 이후 착공한 시설이 2027.12.31. 이후 가동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그 외 발전시설·에너지저장기술: 2033년 착공분까지 100%, 2034년 75%, 2035년 50% 적용 후 2036년 이후 착공분은 공제 없음 ※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에 설치된 에너지저장기술은 태양광·풍력 조기 종료 규정의 예외
§45U 기존 원전 생산세액공제	▪ 적격 기존 원전에서 생산·판매한 전력 - 2032년 말까지 적용하며, 203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미적용
§45V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	▪ 생산량과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청정수소 생산 - 2027.12.31.까지 착공한 적격 시설에 적용. 해당 시설은 최초 가동일부터 10년간 생산된 청정수소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음
§45Q 탄소포집·저장세액공제	▪ 포집한 탄소산화물의 지중 저장 또는 적격 활용 - 2032.12.31.까지 착공한 적격 시설에 적용. 공제는 탄소포집 설비의 최초 가동일부터 12년간 적용
§45Z 청정연료 생산세액공제	▪ 적격 청정수송연료의 생산·판매 - 2029.12.31.까지 판매한 수송연료에 적용
§45X 청정에너지 부품 제조세액공제	▪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한 적격 청정에너지 부품 - 일반 부품: 2030~2032년 판매분에 공제율을 각각 75%→50%→25%로 단계 축소하고, 2033년부터 공제 없음 - 핵심광물: 2031~2033년 생산분에 공제율을 각각 75%→50%→25%로 단계 축소하고, 2034년부터 공제 없음 - 풍력 부품: 2027.12.31. 이후 생산·판매분은 공제 없음 - 야금용 석탄: 2029.12.31. 이후 생산분은 공제 없음

※ 출처: United States Code

○ **[연방 토지의 석유·가스 개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행정명령과 OBBBA를 통해 미국 내 에너지 개발을 확대하고 관련 인허가·행정 절차의 신속화를 추진함**

–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미국 에너지 해방'(EO 14154)으로 에너지 개발과 규제·인허가 절차 재검토를 지시하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EO 14156)을 통해 에너지 공급·기반시설 부족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해 연방기관에 에너지 자원과 관련 인프라의 개발·생산·수송·발전을 촉진하도록 지시함

– OBBBA는 알래스카 국립석유비축지(NPR-A)를 포함한 연방토지의 석유·가스 임대와 석탄 개발 확대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본 법안에 따라 미국 토지관리국(BLM)은 법에 지정된 9개 주에서 임대 가능한 연방 토지가 있는 경우 회계연도마다 최소 네 차례 석유·가스 임대 판매를 실시함

○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연료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미국 환경보호청(EPA) 규정을 조정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 당시 2024년 「청정대기법」 제111조에 따라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발표하고 신설되는 가스 발전소 및 기존 석탄 발전소에 대해 탄소포집저장(CCS) 적용 의무 등을 규정함

– 그러나 2026년 9월, EPA가 '2024년 탄소배출 기준' 대부분을 폐지하는 최종 규칙을 확정함에 따라 올해 11월 16일 시행 예정이며, 이 외의 발전 부문 잔여 온실가스 규제 전면 폐지 등을 추가로 제안

○ **[전력망·전력수요 대응] 미국 연방전력법(FPA)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전력 규제 권한을 나누며, 최근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송전망 확충과 대형 수요자의 계통 접속이 주요 과제로 부상함**

–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주간 전력 도매거래와 송전을 규제하고, 주·지방 규제기관은 소매 전기요금과 지역 배전을 담당함

– FERC는 Order No. 1920에 따라 각 지역 송전사업자에게 최소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송전계획과 비용 배분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지역별 이행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2026년 6월에는 6개 지역 전력망 운영자에게 대형 수요자 관련 요금규정의 적정성을 소명하거나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관련 심사를 진행 중

< 미국 에너지·전력 분야의 주요 정책 변화와 현행 제도 >

정책 분야		기존 제도	주요 변화 및 현행 기준
①청정 에너지 세액공제	금지외국 기업 관련 제한	- 해당 제한 없음	- §§45Q·45U·45X·45Y·45Z·48E에 금지외국기업 관련 제한 신설 - 물질적 지원 제한은 §§45X·45Y·48E에 적용
	태양광·풍력	- §45Y§48E: 적격 시설에 세액공제 적용	- §45Y§48E 세액공제 조기 종료 - §48E 에너지저장기술을 조기 종료 규정에서 제외
	원자력	- §45U: 기존 원전 발전 지원 - §45Y§48E: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발전시설 지원	- 조기 종료 규정 미적용 - 원전·첨단원자로 확대 및 인허가 절차 개편 추진
	수소·청정 연료	- §45V: 청정수소 생산 지원 - §45Z: 청정연료 생산 지원	- §45V 적용 대상 착공 기한 단축 - §45Z: 적용 기간 연장, 원료의 원산지와 금지외국기업 관련 제한 추가
	CCS	- §45Q: 탄소포집·저장 세액공제	- §45Q 유지, 공제액 조정 및 금지외국기업 관련 제한 추가 - 2025.7.4. 이후 가동되는 설비는 지중저장과 탄소 활용 간 공제액을 동일하게 조정
	청정에너지 부품 제조	- §45X: 미국 내 적격 청정에너지 부품 생산에 세액공제 적용	- 금지외국기업 관련 제한 추가 - 풍력 부품은 2027.12.31. 이후 생산·판매분부터 공제 대상에서 제외
②연방 토지의 석유·가스 개발		- IRA에 따른 에너지 지원 및 연방 토지 관련 제도	- OBBBA: NPR-A 석유·가스 임대 및 석탄 개발 확대 - 행정명령: 미국 내 에너지 개발·인허가 절차 신속화 - 지정된 9개 주에서 임대 가능한 토지가 있는 경우 회계연도마다 최소 네 차례 석유·가스 임대 판매 실시
③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 2024년 EPA가 「청정대기법」 제111조에 따라 화석연료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기준 마련	- OBBBA와 별도로 EPA가 2024년 기준의 대부분을 폐지하는 최종 규칙을 확정하고, 나머지 기준 폐지도 제안 - 최종 폐지 규칙은 2026년 11월 16일 시행 예정, 나머지 기준 폐지는 제안 단계
④전력망·전력수요 대응		- 연방전력법에 따른 연방·주정부의 권한 분담	- FERC: 주간 송전·도매거래 규제, Order No. 1920에 따라 송전계획과 비용 배분 절차 마련 - 주·지방 기관: 대체로 소매 요금·배전 담당

※ 출처: 본문 내용 종합

② 선거 결과의 정책 영향과 변화 전망

○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양원의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청정에너지 지원 복원과 전력 규제 개편 법안의 양원 심사·협상 여지가 커지고 행정부 에너지 정책 집행에 대한 감독도 확대될 전망**

- 민주당은 양원 상임위와 의사일정을 주도해 관련 법안의 심사와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일반 법안의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통상 60표)과 대통령 거부권 무효화 의석까지는 확보하지 못하여 민주당 법안의 입법까지는 보장되지는 않음
- 2006년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을 때도 에너지 입법은 의회 협상 과정에서 조정됐으며, 하원안의 재생에너지 의무와 세제안 대부분은 최종 법안에서 제외된 반면 연비 기준과 재생연료 기준 등은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에 반영됐음
-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IRA 세액공제 복원과 청정에너지·송전망 확대를 가계 에너지 비용 완화와 연결해 제시했으며, 양원 장악 후에도 관련 정책은 기후 대응과 전력 가격·공급 확대를 함께 고려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 과거 입법 사례와 민주당의 최근 에너지 의제를 고려하면 2027년 초에는 민주당 주도의 법안 심사와 행정부 감독이 확대될 수 있으나, 정책 변화는 세액공제 전면 복원이나 연방 토지 개발기조의 일괄 전환보다 합의 가능한 개별 조항을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큼

○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민주당 하원의 재추진 의제를 넘어 양원 논의로 확대될 수 있으나, 전면 복원 여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투명함**

- 민주당 하원은 2026년 3월 민주당 의원 120명이 공동발의한 「Energy Bills Relief Act」를 바탕으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와 관련 지원금의 복원을 다시 추진할 수 있음
- 민주당이 상원도 장악하면서 양원의 법안 통과 장벽은 낮아졌으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부활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과거 수준으로 복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연방 토지의 석유·가스 개발] 민주당의 양원 장악으로 BLM 규칙과 집행에 대한 의회 감독이 강화될 수 있으나, 법정 임대 판매 의무가 임대 정책 변화의 범위를 제한할 전망임**

- 내무부가 2026년 6월 제안한 석유·가스 임대 및 자원 낭비 방지 규칙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2027년 초 청문회와 자료 요구를 통해 개정 내용과 BLM의 후속 집행 계획을 점검할 수 있음
-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임대 재협상, 핵심광물 거래, 수은·대기 유해물질 기준 면제 등을 조사해 온 만큼, 양원 다수당 지위를 바탕으로 에너지·환경·천연자원(EENR) 분야의 행정부 감독을 확대하면서 BLM의 임대·규칙 변경도 점검할 전망임
- OBBBA는 법에 지정된 주에서 임대 가능한 연방 토지가 있을 경우 BLM이 회계연도마다 최소 네 차례 석유·가스 임대 판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중단하거나 변경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함

○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민주당이 양원에서 감독과 규제 복원 입법을 추진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실제 복원에는 제약이 있음**

– 민주당은 양원에서 청문회·조사와 세출 심의를 강화하고, EPA가 폐지한 2024년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기준 일부를 복원하는 법안을 추진할 수 있음

– 법안이 양원을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원에서 이를 뒤집을 만큼의 찬성이 필요해 규제 복원 가능성은 제한적이므로, 중간선거 이후에도 EPA의 추가 규칙 확정 여부와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임

○ **[전력망·전력수요 대응] 대형 수요자의 계통 보강 비용 부담 기준을 둘러싸고, 주 규제기관에 연방 기준의 채택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과 FERC가 구속력 있는 연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간 조정이 양원 입법 논의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임**

– 대형 전력수요자가 전력망 보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양당이 공유하고 있으며, 선거 전 하원은 주 규제기관이 대형 수요자에게 적용할 연방 비용 기준의 채택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을 417 대 3으로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는 법안 심의 개시 동의에 대한 토론 종결 표결이 찬성 57표 대 반대 43표로 가결 요건인 60표에 미달했음

– 민주당이 발의한 「GRID Savings Act」는 FERC가 대형 수요자의 계통 접속·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안한 만큼, 민주당이 양원 다수당이 된 뒤에는 하원 통과안과 FERC의 의무 기준 설정을 제안한 법안 간 차이를 조정하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음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상업 부문 전력수요가 2027년 2.8%, 산업 부문이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대형 수요자의 계통 접속과 비용 배분 문제가 계속 정책 의제로 남을 것으로 예상됨

< 중간선거 이후 에너지·전력 정책의 주요 변화 전망 >

정책 분야	변화 전망	주요 제약·변수
①청정에너지 세액공제	▪ 세액공제·지원금 복원 법안의 양원 심사 확대 ▪ 예산·세제 협상을 통한 개별 조항 조정 가능	▪ 상원 토론 종결에 통상 60표 필요 ▪ 대통령 거부권과 복원 범위에 대한 협상
②연방 토지의 석유·가스 개발	▪ BLM 규칙 개정·임대 집행에 대한 감독 강화 ▪ 청문회·자료 요구를 통한 개발 정책 점검	▪ 현행법상 임대 판매 의무에 따른 정책 변경 제약 ▪ 판매 의무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
③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 EPA 규제 폐지에 대한 양원 감독 확대 ▪ 폐지된 배출기준의 일부 복원 입법 추진 가능성	▪ 대통령 거부권에 따른 입법 제약 ▪ EPA의 추가 규칙 제정과 관련 소송
④전력망·전력수요 대응	▪ 대형 수요자의 계통 보강 비용 부담 기준 논의 확대 ▪ 주 규제기관의 기준 채택 검토안과 FERC의 의무 기준안 간 조정	▪ 연방·주 규제기관의 역할과 기준의 구속력에 대한 이견 ▪ 양원 간 입법 협상과 대통령의 법안 수용 여부

※ 출처: 본문 내용 종합

③ 국내 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 **중간선거 이후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복원 논의와 원전·LNG·전력망 사업에 대한 의회 감독이 강화될 수 있어, 국내 기업은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점검하고 관련 입법·심사 동향을 살펴야 함**

– 세액공제 복원 논의는 태양광·풍력 신규투자의 기대수익과 현지 조달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원전·LNG의 연방지원 심사와 전력망의 대형 수요자 계통접속·비용분담 논의는 사업 추진과 발주 시점의 변수가 될 수 있음

– 기업은 현행 세액공제와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사업성을 평가하고, 법안·예산·청문 동향과 프로젝트별 인허가·금융지원 및 구속력 있는 계약·발주 여부를 점검해 투자·생산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전력 분야별 국내 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

분야	사업 기회	주요 부담·불확실성	대응 방향
①태양광·풍력 공급망	▪ 미국 내 생산기업의 §45X 활용 기회 ▪ 비중국계 공급망 대체 납품 기회 ▪ 시한 전 착공 프로젝트의 후속 기자재 수요	▪ §45Y·§48E 적용 시한 단축에 따른 사업 지연·취소 위험 ▪ 풍력 부품 §45X 공제 2027년 말 종료 ▪ 시한 이후 발주 둔화 가능성	▪ 프로젝트별 착공일·공제 자격 확인 ▪ 원산지·공급망·물질적 지원 증빙 확보 ▪ 풍력 발주·계약 변동에 대비
②원전 건설·기자재	▪ Project Power의 원전 8기 건설 구상(AP1000 6기, APR1400 2기) ▪ 장주기 기자재 선발주 가능성 ▪ 국내 기업의 기자재·시공 참여 여지	▪ 사업부지·구조·일정·발주 미확정 ▪ 상업성 검토·국내 절차·의회 감독에 따른 지연 가능성 ▪ 장기 공사·초기비용 부담	▪ 사업별 상업성·재원·절차·발주 확인 ▪ 노형별 기자재 공급 범위·시공 역할 합의 ▪ 계약 조건을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투자
③LNG·에너지 개발	▪ 국내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 ▪ 파이프라인용 강재·기자재 공급 가능성 ▪ 장기 LNG 구매·우선 접근권 가능성	▪ 총사업비 445~545억 달러 및 투자·재원조달 미확정 ▪ 연 100만 톤 LNG 도입은 주요조건합의서(HOA) 단계 ▪ 의회 감독 강화 시 일정 지연 가능성 ▪ 알래스카 주지사 당선인 조너선 크라이스톰킨스(민주당)와 주의회의 세제 지원안 처리 여부	▪ 투자·구매·공급계약의 구속력 확인 ▪ 사업성·재원조달 검토 ▪ 지연·해지·조건 변경 조항 마련
④전력망·AI 전력 인프라	▪ 데이터센터·제조업 전력 수요 증가 ▪ 미국의 한국산 중형 변압기 수입액 증가 (2022~2025년 약 6.2배) ▪ Project Star 참여 기회	▪ 대형 수요자 계통접속·비용 분담 기준 심사 ▪ Project Star 공급사·물량 미확정 ▪ 규칙 변화에 따른 납품 일정·발주 규모 변동 ▪ 텍사스 주지사 당선인 지나 히노호사(민주당)의 데이터센터 인허가·세제 공약 집행 방향	▪ 지역별 접속 기준·비용 부담 주체 확인 ▪ 벤더 등록·인증·현지 서비스 준비 ▪ 조달 일정에 맞춰 생산능력 조정

[태양광·풍력 공급망]

○ **현지 생산기반과 공급망 대체 수요는 일부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현행 제도상 세액공제 축소와 사업 일정 불확실성은 관련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단기적 수주 특수의 경우, §45Y·§48E 공제 기한(2026년 7월 4일)을 맞추기 위해 발전사업자들이 착공과 기자재 조달을 서두르면서 국내 기자재 기업들에게 일시적인 납품 기회가 있으며, 올해 6월 당시 세액공제 적용을 확보한 태양광 프로젝트 파이프라인만 200GW 이상으로 추산됨
-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액공제 혜택 시한 단축으로 발전사업자들의 사업비·금융 조달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는 향후 신규 발주 지연과 제조사들의 생산시설 가동률 저하 리스크로 직결됨
- 미국 내 생산기반을 갖춘 국내 제조기업은 탈중국 기조에 따른 공급망 대체 수요를 흡수하고, 일부 유지되는 §45X 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으나, 부품별 상이한 공제 기한·요건과 금지외국기업(FEOC) 규제를 준수해야 함
- 특히 해상풍력 기자재 기업은 §45X 풍력 부품 공제가 2027년 말 조기 종료되고, 해상풍력의 임대·인허가 불확실성이 겹쳐 수주 취소 또는 발주 지연 위험이 큼

○ **국내 기업들은 세액공제 관련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프로젝트별 착공 시점과 공사의 연속성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적용 여부 및 공제 미적용 시 사업성을 함께 점검해야 함**

- 미국 공급망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은 부품별 원산지와 공급자 지배구조·통제 관계를 추적해야 하며, 금지외국기업으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선제적으로 구비해야 함
- 수주 계약 진행 시, 고객사의 인허가 지연이나 계약 변경·취소 사태에 대비하여 납기 및 해지 시 위약금 조건을 점검하고, 단일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관리

[원전 건설·기자재]

○ **데이터센터·AI 인프라 등 미국 내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주요 원전 정책과 투자 계획은 국내 기업들에게 시공·기자재 참여 기회를 제공**

- 2026년 10월 1일 발표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중 'Project Power'는 최대 1,200억 달러를 활용, 미국에 대형 원전 8기(AP1000 6기·APR1400 2기)를 건설하는 구상으로, 상업성 검토 전제로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 장주기 기자재 선발주를 협의 중이고, 특히 한국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투자 방안이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투자 주체·가격·권리와 거래 시점은 후속 협상에서 정해질 예정
- 트럼프 행정부는 2050년까지 400GW 원전 확대 및 인허가 절차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부(DOE)는 AP1000 최대 10기의 장주기 기자재 구매 대상 175억 달러 규모 조건부 대출을 발표함
-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청정 전원으로서 원전을 지지하는 동시에, 막대한 건설비가 전기요금 인상과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

- 이처럼 거시적인 투자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실제 기자재 발주 및 시공 계약으로 이어지기 위해 ▲의회 심의와 비용 통제 강화에 따른 투자결정 지연, ▲장주기 기자재 발주의 불확실성, ▲상업성 심사 통과 여부 등의 변수가 상존함

○ **국내 기업들은 미국 원전 수주 모멘텀에서 사업 추진과 발주가 구체화되는 단계에 맞춰 투자하고, 노형별 공급 기회와 계약상 위험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사업별 상업성 심사·재원조달·국내 절차와 EPC 계약 및 장주기 기자재 발주 일정을 확인해 투자와 생산능력 확대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Project Power' 관련 노형별 AP1000(미국주도)과 APR1400(한국주도)의 공급 범위와 시공 역할을 구분해 협의하고, 미국 원전 공급망 등록·품질 요건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협상 시 기자재 공급 물량 배정과 EPC 참여 조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특히 장주기 기자재 납품 계약 시 현지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백지화 등에 대비하여 기발생 보전 비용, 기한 연장,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항 등을 반영해야 함

[LNG·에너지 개발]

○ **민주당의 양원 장악으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의회 감독이 강화될 수 있으며, 지원 관련 심사와 사업성 검토가 지연될 경우 국내 기업의 투자와 기자재 발주 일정에 영향을 미침**

- 'Project North'는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남부 터미널까지 운송하여 수출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미국은 상업적 합리성 및 국내법상 조건 충족을 전제로 ①철강·기자재 관세 인하, ②경제적 장기 LNG 구매계약, ③생산 LNG 우선 접근권을 제공하기로 함
- 이에 한국 기업(국내 P사)과 미국 LNG 사업자(미국 G사)는 파이프라인용 강재 공급, 20년간 연 100만 톤 규모의 LNG 구매를 위한 주요조건합의서(HOA), 최종투자결정(FID) 이전 자본투자를 포함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으며, 정부 간 전략투자는 사업성 검토와 국내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가 정해질 예정

○ **알래스카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조너선 크라이스톰킨스가 당선되면서, LNG 사업의 재산세 납부 시점 조정 공약이 우리 기업의 사업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크라이스톰킨스 당선인은 알래스카 LNG 사업의 재산세 납부 시점을 가스 생산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지지해 왔으며, 해당 공약의 입법 여부에 따라 사업 초기의 세금 부담과 자금조달 여건이 달라질 수 있음
- 공화당 소속 마이크 던리비 주지사 행정부가 제안한 '알래스카 LNG 재산세 부담 완화안'(HB381 등)은 2026년 주의회에서 무산됐으며, 연방 인허가는 2025년 12월 완료됐지만, 주 차원의 세제 지원이 확정되지 않아 재산세 부담과 후속 입법 여부가 사업 경제성과 자금조달의 변수로 남아 있음

○ **국내 기업은 알래스카 LNG 사업을 확정된 투자·수주로 전제하지 않고, 사업성 심사와 재원조달, 주정부 세제 지원의 확정 단계에 맞춰 투자와 발주를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총사업비가 445억~545억 달러로 추산되는 대형 사업인 만큼, 자금조달 구조와 장기 LNG 구매계약의 확정 여부, 최종투자결정을 단계별 투자 집행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
- 지분 참여·LNG 구매·기자재 공급 계약에는 사업 지연이나 지원 조건 변경 시 비용 보전, 납기 조정, 해지 권리를 반영해 투자 손실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전력망·AI 전력 인프라]

○ **대형 수요자의 계통접속·비용분담 기준에 관한 입법·감독 논의가 확대될 수 있어, 국내 기업은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와 함께 프로젝트별 발주 일정의 변동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민주당은 대형 전력수요자가 계통 보강 비용을 부담하도록 FERC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해 왔으므로, 관련 입법·감독이 강화되면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비용과 접속 조건이 사업 초기 투자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FERC가 지역 전력망 운영자들에게 대형 수요자의 접속 규칙과 비용분담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지역별 규칙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데이터센터 사업 일정이 바뀌면 변압기·배전기기 등 국내 전력기기 기업의 납품 일정과 발주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데이터센터와 제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송전망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의 한국산 중형 변압기 수입액도 2022~2025년 약 6.2배 늘어 국내 전력기기 기업의 수출 기회는 이어질 수 있음
- 'Project Star'는 텍사스에 6,472MW 규모 발전소를 건설해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한미 협력 사업으로, 국내 기업의 발전 기자재·설계·시공·운영 참여 기회가 제시됐으나 구체적인 공급사와 물량은 확정되지 않음

○ **텍사스 주지사 선거 결과 민주당 지나 히노호사가 당선되면서 데이터센터 관련 주정부 정책이 국내 기업 참여 사업의 변수로 부상함**

- 히노호사 당선인은 기업이 규칙 없이 물과 전력을 사용하고 주민은 개발 결정에 참여하지 못해 지역사회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며, 주민 참여와 비용 전가 방지·수자원 보호를 위한 입법 전까지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단하고 보조금을 폐지하자는 입장임
- 히노호사 당선인의 공약이 입법·행정 조치로 구체화되는 방식에 따라 'Project Star'의 인허가 요건과 사업 일정·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음

○ **전력망·AI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은 계통접속·조달 기준과 사업별 발주 일정을 확인해 투자와 생산능력 확대 시점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전력기기 기업은 데이터센터·유틸리티·EPC 사업자의 조달 일정과 지역별 계통접속 기준을 함께 살펴, 벤더 등록·인증·현지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실제 발주에 맞춰 생산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Project Star' 등 한미 협력사업은 참여 기회를 확정 수주로 간주하지 말고, 품목별 입찰 일정과 발주 조건을 확인해 투자와 생산능력 확대 시점을 단계적으로 판단
- 데이터센터 투자·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사업 초기부터 계통접속 가능 시점과 전력망 보강 비용의 부담 주체를 확인하고, 기준 변경이나 접속 지연에 따른 일정·비용 조정 조항을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시사점

-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착공 시한을 앞두고 태양광·풍력 프로젝트의 착공과 기자재 조달이 집중되면 단기 발주가 늘 수 있지만, 일부는 예정된 사업이 앞당겨진 영향일 수 있어 종료 후 발주 둔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청정에너지 부품제조 세액공제(§45X)가 미국 내 생산에 적용되는 만큼 국내 기업의 수혜는 현지 생산기반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한국산 부품 수출기업은 금지외국기업 관련 요건을 충족한 공급망 대체 수요를 확보해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Project Power와 DOE의 조건부 대출은 원전 기자재 수요의 기반이 될 수 있지만, 국내 기업의 참여 규모와 시점은 사업별 투자 결정과 실제 발주가 이뤄져야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 Project North의 알래스카 LNG 사업에서 국내 기업의 장기 구매 참여가 기자재 수주로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구매계약에 따른 부담과 투자·공급계약에서 기대 이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는 발전·전력기기 시장을 키울 수 있지만, 계통접속 가능 시점과 전력망 보강 비용의 분담 조건에 따라 프로젝트별 추진 속도와 기자재 발주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자동차·배터리

① 현행 정책 및 법적 근거

○ **[자동차]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중시하며, 관세 및 무역협정 재검토를 통해 미국에 유리한 북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기조를 보임**

–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를 근거로 2025년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같은 해 5월부터 특정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를 적용

– 다만,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를 준수하는 완성차의 경우 미국산 부품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관세를 면제하는 방식이 적용되며, 협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부품에도 예외를 인정함

– 또한 미국 내 차량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자동차 제조사는 일정 요건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 부품 관세 부담을 상쇄하는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Section 232에 따른 완성차 및 부품 관세 부과 >

구분	세부 항목	내용
관세 부과	완성차· 자동차 부품	▪ 2025년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원칙적으로 25% 관세 부과, 이어 2025년 5월 3일부터 지정된 특정 자동차 부품에 원칙적으로 25% 관세 부과 ▪ 한국의 경우 2025년 11월부터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가 15%로 조정 ▪ 기존 **일반** 관세가 15% 이상이면 추가 Section 232 관세는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이면 차액만 추가하는 구조
예외	USMCA 준수에 대한 관세 면제	▪ 수입업자(importer)는 차량 모델별 미국산 부품 비중(value of U.S. content)을 상무부장관에게 증빙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으면 차량 전체 가치에서 미국산 비중을 제외한 **비미국산 가치에만 25%의 관세를 적용**함 ▪ 미국산 **부품** 비중은 미국에서 전부 조달·생산되거나 실질적으로 변형된 부품의 가치로 산정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의해 과다 신고가 확인되면, 해당 차량 전체 가치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동일 수입자의 동일 모델 차량에 대해 소급 및 향후 관세를 적용할 수 있음
	미국 내 생산 실적에 따른 자동차 부품 관세 상쇄	▪ 2030년 4월까지 **미국 내 최종 조립 차량의 MSRP 합계액(aggregate 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의 3.75%**를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관세 상쇄 한도를 산정하여, **미국 현지 생산에 따른 부품 관세 부담을 일부 경감**하고자 함 ▪ 당초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자동차 부품 관세 상쇄 제도를 2030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2년차부터 2.5%로 낮아질 예정이었던 상쇄 한도 산정 비율을 3.75%로 상향·유지함

*출처: Whitehouse.gov 보도 종합

○ **한편 2026년 7월 미국은 USMCA 연장에 합의하지 않고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역내 생산 요건 등을 점검하는 등 미국 제조업에 유리한 교역 조건을 확보하고자 재검토를 진행함에 따라, 향후 북미 자동차 산업의 관세 체계와 공급망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기존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를 대체하며 2020년 7월 1일 발효된 USMCA는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체결한 협정으로, USMCA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USMCA는 미국·멕시코·캐나다를 하나의 역내 생산권역으로 묶고 있어, 미국은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통해 북미 자동차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함

– 로이터가 보도한 미국 측 협상 요구안에 따르면, 미국은 USMCA 특혜관세 적용 요건으로 미국산 비중을 50%로 설정하는 방안을 별도 추진하는 반면, 멕시코는 이에 반대하며 미국이 먼저 멕시코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는 Section 232 관세를 낮추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현행 USMCA의 자동차 관련 주요 규정 >

구분	주요 내용
역내 부가가치 기준 (RVC, Regional Value Content)	▪ 승용차·경량 트럭의 역내가치비율(RVC) 기준, 즉 차량에 투입된 가치 중 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발생한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3년 7월부터 75%를 적용하고 있음 ▪ 대형 트럭의 경우 2027년 7월부터 70%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철강·알루미늄 조달 요건	▪ 자동차 제조사가 구매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가치 중 70% 이상을 북미에서 조달해야 함
노동 가치 기준 (LVC, Labor Value Content)	▪ 자동차 생산 가치 중 일정 비율을 시간당 16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북미 제조시설의 지출로 충족해야 함 ▪ 최종 기준은 승용차 40%, 경량·대형 트럭 45%이며, 자재·제조 지출 외에도 연구개발·IT 및 특정 조립시설 관련 지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인정함

※ 출처: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MCA Auto Report

○ **[전기차·이차전지]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의 통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는 폐지된 반면, 미국 내 생산 및 투자에 대한 지원은 일부 유지되어 현지 생산 중심의 정책 기조가 계속됨**

– 2025년 9월 30일부로 신차 구매 세액공제(30D), 중고차 구매 세액공제(25E),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45W)가 종료되었으며 주택용 충전시설 세액공제(30C) 또한 2026년 6월 이후 설치·가동되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IRA에 따른 주요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됨

– 또한 OBBBA는 이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의 고위험 프로젝트를 지원해 온 연방정부의 대출 지원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첨단기술차량제조(ATVM) 대출 프로그램의 미집행 신용보조 재원 약 16억 달러도 폐지 대상에 포함됨

– 미국 교통부(NHTSA)는 기업평균연비(CAFE) 기준을 재조정해 자동차 제조사의 연비 규제 부담을 완화했으며, OBBBA에 따라 기준 미준수에 대한 금전적 벌칙 또한 폐지됨

– 환경보호청(EPA)의 배출가스 규제와 캘리포니아주의 무공해차 보급 규제(ACC II)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지속되고 있음[14]

– 한편, 미국 내 배터리 생산 및 에너지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Section 45X·48E·48C)는 일부 유지되나, OBBBA에 따라 외국 기업 관련 요건 및 적용 기한 등이 변경됨. 특히 금지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 PFE) 개념과 PFE로부터의 실질적 지원 관련 제한이 도입되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공급망 내 원료·부품 조달 요건 등이 세액공제 적용에 영향을 미침

< 현행 OBBBA 배터리 관련 제도 >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Credit, Section 45X)	
세액공제 내용	▪ 양극·음극 활물질, 전해질, 배터리급 리튬·흑연 가공: 적격 생산비용의 10% 공제 ▪ 배터리 셀: $35/kWh 공제 ▪ 배터리 모듈: 셀 공제에 추가하여 $10/kWh 또는 셀을 사용하지 않는 모듈은 $45/kWh 공제
PFE 요건	**① 기업 수준** ▪ 해당 연도에 특정외국단체(Specified Foreign Entity, SFE) 또는 외국영향단체(Foreign Influenced Entity, FIE)에 해당하는 제조사는 §45X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SFE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 정부·기업·국적자 등의 지배와 관련되며, FIE는 SFE의 지분·채무·지배구조상 권리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 **② 계약 수준** ▪ 생산량, 고객 선정, 원료 조달, 운영 방식, 로열티 지급, 라이선스 제한 등에 관한 계약이 PFE에 통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제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음 **③ 제품 수준** ▪ 배터리 부품에 대하여 2026년 판매 부품은 60% 이상, 2029년 이후 판매 부품은 85% 이상의 MACR을 충족해야 함 ▪ MACR(Material Assistance Cost Ratio)은 제품 또는 설비의 산정 대상 비용 중 PFE가 제공한 재료·부품 등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중으로, PFE 관련 공급망 의존도를 판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표

기술중립 투자세액공제(Tech-Neutral Investment Credit, Section 48E)	
세액공제 내용	▪ 독립형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 및 하이브리드 프로젝트의 에너지저장 설비: 적격 투자액의 6%. 임금·도제 요건 충족 시 최대 30% ▪ 에너지 커뮤니티 투자 및 미국산 부품 사용 관련 추가 공제: 각 요건 충족 시 10%p 추가 공제
PFE 요건	▪ PFE 관련 기업 수준 및 계약 수준의 제한은 Section 45X와 동일한 기본 규제 체계를 적용하며, 제품 수준에서는 Section 48E에 적용되는 MACR 기준을 충족해야 함 ▪ 2026년 착공 기준 최소 MACR은 일반 청정전력 시설 40%, 에너지저장 기술(EST) 55%이며, 이후 착공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 출처: CSIS, A New Phase for the U.S. Battery Industry 및 언론보도 종합

[14]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도입한 친환경 자동차 의무화 규정으로, 연간 4,500대 이상의 경·중형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제조사에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68%, 2035년까지 신차 판매의 100%를 무공해차(Z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로 충족하도록 요구함.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주의 독자적인 배출가스 규제가 연방정부의 규제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EPA의 면허 승인을 의회검토법(CRA)으로 취소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다투고 있음

○ **또한 미국 에너지부(DOE)는 이차전지 관련 핵심광물의 해외 공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내 핵심광물 가공, 배터리 소재·부품 제조 및 재활용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DOE는 배터리 소재 가공·제조·재활용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내 핵심광물 및 배터리 공급망 확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지원 기회를 발표하고 8월 관련 분야 7개 프로젝트를 선정함
- DOE 지원사업에서 또한 외국 우려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 관련 공급망에 대한 제한을 두어, 핵심 광물에 있어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 우려 국가의 접근을 배제하고 미국과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함
-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핵심광물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내 채굴·분리·정제·가공 역량 확충을 추진하는 것에 더해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분투자와 대출, 가격하한 및 장기 구매보장 등을 활용해 관련 기업의 생산 확대를 지원하고 있음

② 선거 결과의 정책 영향과 변화 전망

○ **[자동차] 미국 내 생산 확대 기조는 중간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Section 232 관세를 통한 통상 압박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2018년 중간선거]**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확보했으나, 중국에 대한 Section 301 조치가 지속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통상 압박 기조는 대체로 지속되었으며,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 기반을 위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Section 232에 따른 국가안보 조사 또한 실시됨
-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의 확대로, 결국 당시 행정부는 관세 위협을 유지하면서도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을 우선 추진하였고 Section 232 조사에 따른 추가적 관세는 부과되지 않음
- **[2026년 중간선거]** 민주당이 양원을 탈환함에 따라, 자동차 관세가 소비자 가격과 미국 제조업체의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 삼고 관련 청문회 및 조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기존 관세가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변경 여부는 입법 및 행정부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음
- 반면 민주당 또한 미국 내 생산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고 있어, 미국 내 최종 조립 실적을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관세 부담을 상쇄하는 제도가 2030년까지 연장되는 등 관련 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USMCA 재협상의 경우, 의회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민주당이 요구하는 멕시코의 노동법 집행 강화 및 신속대응메커니즘(RRM) 개선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음**

-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이 2021년 만료됨에 따라, 개정안이 의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 경우 의회가 수정을 요구할 여지가 과거(일괄 찬반투표)보다 커짐.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와의 협의를 우회하거나 의회의 동의 없이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의회의 영향력 확대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함

– 특히 관세 변경을 수반하는 법안은 관행상 하원에서 먼저 처리되므로 2027년 의회 출범 이후 개정안 통과를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의 요구(노동·환경 집행 강화 등)를 일부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

< 참고: 2018 중간선거에 따른 미국 자동차 통상정책 변화 >

중간선거 이전의 정책 추진
▪ **[Section 232 관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부터 Section 232에 따라 철강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함. 이어 수입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와 미국 자동차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Section 232의 조항을 활용해 자동차·부품 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함 ▪ **[NAFTA 재협상]:**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 개선과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2017년 8월 NAFTA 재협상을 시작함. 2018년 9월 미국·멕시코·캐나다는 후속 협정인 USMCA의 주요 내용에 합의했으며, 자동차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북미 내 생산을 유도하고자 함
▼
중간선거 결과와 의회의 견제
▪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 상원 다수당 유지 및 민주당 하원 탈환** ▪ **[Section 232 관세]: 자동차·부품 관세에 대해서는 중간선거 전부터 초당적 반대가 제기됨.** 민주당 의원들은 자동차 관세가 소비자 가격을 높이고 미국 내 생산·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자동차 관세 부과에 반대함. 일부 공화당 의원들 또한 반대하여 중간선거 이후인 2019년 5월 양당 하원 의원 159명이 자동차 관세 반대 서한을 제출하였으며, 대통령이 Section 232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며 의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됨 ▪ **[NAFTA 재협상]:** 민주당 의원들은 중간선거 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NAFTA 재협상 통지서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 목표가 명시되지 않았고, 민주당과의 협의도 부족하다고 비판함. 특히 자동차 등 상품의 원산지 규정 강화 여부와 멕시코의 노동권 보호 의무 이행 및 집행 방안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협상 과정에 대한 의회의 감독과 구체적인 협상 목표 제시를 요구하였음
▼
중간선거 이후 정책 변화 및 결과
▪ **[Section 232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5월 자동차·부품 수입에 대한 Section 232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했으나, **즉각적인 관세 부과 대신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을 지시하고 결정을 최대 180일간 연기함. 이후 해당 조사에 따른 자동차·부품 관세는 실제 부과되지 않음.** ▪ **[NAFTA 재협상]:** USMCA의 주요 합의는 중간선거 이전인 2018년 9월 이뤄졌으나,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이후 비준을 위한 추가 협상이 진행됨.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2019년 12월 노동·환경 규정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바이오의약품의 독점권 보호 기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협정 내용을 수정**하였고, 이후 하원은 2019년 12월 수정된 협정의 이행 법안을 가결함

* 출처: 언론보도 종합

○ **[이차전지] 공급망에서 중국 및 우려 국가 배제를 강화하는 추세는 양당 공통 관심사로 중간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기존 IRA도 청정 신차 구매 세액공제조항(30D)에 우려 외국기업 제한(FEOC)을 두어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처럼 우려 외국기업의 배제는 양당의 공통 관심사임

– OBBBA 또한 기존 IRA의 FEOC 규제 기조를 이어받아 금지 외국기업(PFE) 관련 요건을 45X 등 제조·에너지 관련 세액공제로 확대하고, MACR 등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도입함

○ **전력요금 부담 완화를 주요 의제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이 정책 추진력을 확보함에 따라 청정에너지·전력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정책 집행 방향 및 변화 여부는 추후 의회 구도와 예산 협의 결과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및 예산 변화]** 민주당은 2026년 5월 발표한 에너지 어젠다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전력망과 ESS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며,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2026년 Energy Bills Relief Act를 발의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복원과 전력망 개선 등을 제안함
- 다만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법안 통과에는 상원의 동의와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양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IRA의 전면 복원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하원 세출위원회를 중심으로 DOE의 청정에너지·에너지 저장 관련 예산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안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예산 규모와 사업별 지원 여부는 상원 및 행정부와의 예산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15]
- **[행정부 인사 개편 가능성]** 과거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부진한 성적을 거둔 뒤 대통령이 주요 장관을 교체한 사례가 있는 만큼, 민주당의 양원 장악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 개편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16]
-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사임 가능성이 제기된 DOE 장관 크리스 라이트의 거취 및 후임 인선에 따라 에너지정책의 집행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 있음

○ **핵심광물 분야에 있어서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는 반면, 미국 내 채굴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에서는 당파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남**

- 민주·공화 양당 의원이 참여한 Critical Minerals Partnership Act(2025), STRATA Act(2026) 등이 발의되며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라는 목표에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국내 채굴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에서는 당파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남
- 공화당 주도의 Critical Mineral Dominance Act(H.R. 4090)는 미국 내 광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 및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6년 2월 하원을 통과(224 대 195)해 상원에 회부되었으나, 법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 다수가 반대한 것은 환경 보호 등을 둘러싼 규제 완화 방식에 대한 이견을 보여줌
- 이 외에도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기업에 공적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과 그 과정의 투명성·책임성을 문제 삼고 있으며, 2026년 8월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민간 광산기업 지분 투자와 관련해 미국 회계감사원(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에 조사를 요청함

[15] 현재 세출위원회는 공화당 35명·민주당 28명으로 공화당 다수이며, FY 2024에 12개의 소위원회 중 에너지·수자원개발 소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 재량지출 배정액의 3.66%

[16] 2006년 중간선거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민적 불만으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자, 부시 대통령은 다음 날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사임을 발표한 바 있음

③ 국내 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 자동차·배터리 분야 주요 정책 변수와 국내 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

분야	주요 정책변수	국내 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자동차	Section 232에 따른 자동차·부품 관세 및 철강·알루미늄 관세	▪ 대미 수출 수익성 및 부품업체 가격경쟁력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USMCA 공동 검토 및 원산지 규정 강화 가능성	▪ 북미 역내 부가가치 요건 강화 시 부품 조달 비용 상승 및 생산·조달 구조 재편 부담 ▪ 차량·부품별 북미산 부가가치 비율과 원산지 증빙 자료를 점검하고, 북미 생산시설 및 부품 조달 구조 조정 가능성 검토
	멕시코 노동권 집행 및 RRM 강화 요구	▪ 멕시코 협력업체의 노동권 관련 조사로 통관·관세 처리 지연 및 공급 차질 발생 가능성 ▪ 협력업체의 노동 컴플라이언스 점검, RRM 집행 동향 모니터링 및 핵심 부품 대체 조달 방안 마련
이차전지	중국 등 금지 외국기업 관련 세액공제 제한 및 원재료·부품 조달 요건 (PFE 규정)	▪ 중국산 핵심광물·배터리 소재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충족 및 공급망 재편 부담 증가 ▪ 소재별 공급업체·원산지·지배관계와 조달 비용을 점검하고, 비PFE 공급처 확보
	전력망 개선 및 ESS 관련 세액공제·예산 정책	▪ 민주당의 전력요금 부담 완화 및 전력망 확충 추진에 따라 ESS 수요 확대와 국내 배터리 기업의 사업 확장 가능성
	핵심 광물 미국 내 채굴·가공 확대, 동맹국 협력 및 비중국 공급망 확보	▪ 북미산 핵심광물 조달 다변화 및 국내 소재기업의 공급 기회 확대 가능성 ▪ 현지 광산·가공 프로젝트의 인허가 및 상업 생산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배터리 재활용 사업 지원과 블랙매스 등 관련 스크랩의 미국 내 판매·공급	▪ 재활용 지원 확대와 블랙매스 등 관련 스크랩의 미국 내 공급 유도로 현지 원료 확보 및 처리 역량의 중요성 증대 ▪ 미국 내 폐배터리·제조 스크랩 확보부터 재활용·정제, 회수 금속 판매까지 연결되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관련 규제의 연장·확대 여부 모니터링

* 출처: 본문 내용 종합

○ **[자동차] USMCA 재검토에 따른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 차량별·부품별 북미 역내 부가가치 비율과 원산지 증빙 자료 사전 점검**

– 2026년 7월 USMCA 3국 공동 검토 이후 미국은 협정을 현행 형태로 갱신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북미 생산 확대 및 역외 공급망 의존도 축소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026년 2월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생산·무역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전기차 등 자동차 기술 및 생산 공정 변화에 대한 규정의 적합성 ▲가격·수요·설비투자 등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쟁점으로 조사 중이며, 2027년 7월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 따라서 국내 자동차 기업은 북미산 부품 비율 및 원산지 증빙 자료를 점검하고, 규정 변경에 대비해 북미 생산시설과 부품 조달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멕시코 생산시설의 노동권 집행 강화도 USMCA의 주요 변수로, 협력업체의 노동 컴플라이언스를 점검하고 관련 조사로 인한 공급 차질에 대비해 핵심 부품의 대체 조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내에서는 USMCA 신속대응노동메커니즘(RRM)의 집행 강화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규정과 집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멕시코 노동법 집행 강화와 RRM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하원 노동 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 65명은 USMCA 공동 검토에서 노동 기준 개선, 멕시코 노동법 개혁 지원, RRM 강화·확대를 요구한 바 있음

– 노동권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개시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수입품에 대한 통관·관세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급망 비용 증가 및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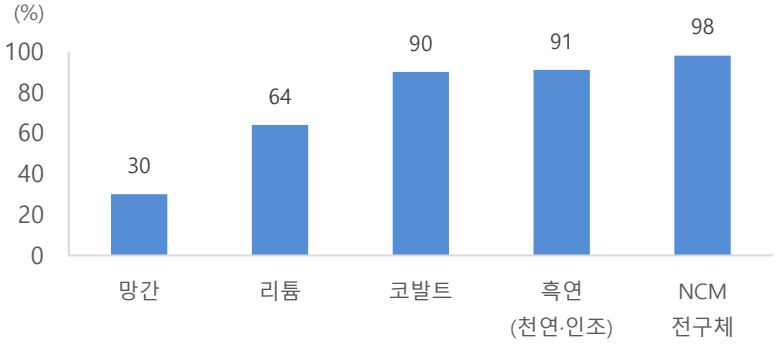
– 실제로 미국은 2026년 10월 멕시코 소재 자동차 부품 공장 GLM Components의 노조 활동 및 단체교섭권 침해 의혹에 대해 USMCA 신속대응노동메커니즘(RRM)에 따른 검토를 요청하고, 해당 시설의 미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정산을 중단하였음

○ **[이차전지] 미국의 보조금·세액공제 적용 요건에 대응해 중국산 핵심광물·배터리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요건을 충족하는 공급처와 조달망을 확보해야 함**

– 국내 배터리 산업은 전구체·양극재·흑연 등 핵심 소재 단계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리튬·흑연 등 핵심 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는 60~90% 수준으로, 미국 OBBBA의 PFE 요건은 한국 기업에게 공급망 재편 부담으로 작용함

– 이에 국내 기업은 소재별 공급업체·원산지·지배관계 및 조달 비용을 점검하고, 비PFE 공급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조달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배터리 원자재 중국 의존도>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NABO 산업동향 & 이슈

- 한편, 중국산 소재 의존도를 낮추고 비PFE 요건에 부합하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과정은 국내 배터리 소재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일례로 포스코퓨처엠은 2025년 중국산 전구체 의존도를 낮춘 양극재를 미국에 처음 출하했으며, 2026년 10월에는 삼성SDI와 비PFE 소재 공급망 확보를 뒷받침하는 약 6조 원 규모의 양극재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함
- 아울러 미국 내 핵심광물 생산·가공 프로젝트의 인허가 및 상업 생산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실제 생산 확대 시 북미산 리튬·코발트 등으로 조달처를 다변화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17] 다만 신규 광산의 생산 시점과 원가 경쟁력이 불확실한 만큼, 프로젝트별 생산 일정과 공급 가격을 고려해 장기 구매계약 및 투자 참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와 재활용 역량 강화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인 만큼, 미국 내 폐배터리 확보부터 재활용 및 회수 금속 판매까지 이어지는 현지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9월 배터리 재활용·회수 지원을 위한 BRACE Act(H.R. 9615)와 EPA의 국가 핵심광물 회수 전략 법안(H.R. 9617)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DOE 또한 8월 핵심광물 가공·배터리 제조·재활용 관련 7개 사업에 총 5억 달러의 지원을 발표함
- 또한 2026년 8월부터 1년간 블랙매스 등 핵심광물 함유 스크랩의 월간 판매량 전부를 원칙적으로 미국 내 구매자에게 배정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가 시행되며, 미국 내 재활용 원료 확보와 처리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
-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미국 내 폐배터리·제조 스크랩의 안정적 확보뿐만 아니라 현지 재활용·정제시설 및 회수 금속의 판매처까지 연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관련 규제의 연장·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환경 보호와 고용 창출을 주요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으나, 세부 정책 방향과 추진 수단에서 차이를 보임**

- **[환경 보호]** 민주당 후보들은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나 청정에너지 전환 등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 후보들도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를 중시하되 지역사회 의견 수렴, 기업의 인프라 비용 부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및 경제적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하는 입장을 보임
- **[고용 창출]** 양당 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나, 민주당 후보들은 최저임금 인상·직업훈련·소기업 지원 등을, 공화당 후보들은 감세·규제 완화와 기업 유치 등을 상대적으로 강조함
- 주지사 교체에 따른 정책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투자 지원의 지급·유지 조건을 점검하고, 현지 고용 창출 목표 및 이행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17]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광물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연방 인허가 절차의 신속화 및 부처 간 조정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2월 네바다주 Silver Peak 리튬 광산과 3월 노스캐롤라이나주 Kings Mountain 리튬 사업이 연방 인허가 절차를 완료함

< 주지사 선거 관련 주요 정책 쟁점 및 전망 >

구분	당선인	주요 내용
조지아	▪ [민주당] 키샤 랜스 바텀스	▪ 2025년 배터리 공장 단속 사건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및 ICE의 단속 방식에 대해 비판한 바 있음 ▪ 전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공)가 전문 기술인력의 원활한 입국을 위해 연방정부에 최대 90일의 단기 제조업 비자 도입을 제안한 바 있어, 차기 주지사의 한국 기업 투자 지원 기조와 연방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음
미시간	▪ [민주당] 조슬린 벤슨	▪ 청정에너지 투자를 통한 양질의 노조 일자리 창출 및 전력망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 ▪ 캐나다와 주정부 차원의 협정을 체결해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접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테네시	▪ [공화당] 마샤 블랙번	▪ 낮은 세율과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입장

* 출처: 언론보도 종합

시사점

▪ **자동차 및 이차전지 산업에서는 중간선거 이후에도 공급망 전반에 있어 중국 등 우려국가를 배제하려는 정책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은 강화되는 원산지 요건과 우려국가 관련 규제에 부합하도록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비중국산 원료 및 부품 조달 확대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원가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공급처별 조달 비용과 생산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관세와 이차전지 관련 세액공제·보조금 등 기업의 수익성과 투자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적용 요건 및 변경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특히 이차전지 산업에서는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전력망 확충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와 관련한 예산·정책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으므로, 에너지부(DOE)의 관련 예산과 전력 인프라 투자 계획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 확대나 지원 정책의 실제 시행 여부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과 행정부의 정책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반도체 및 첨단제조

① 현행 정책 및 법적 근거

○ **트럼프 행정부는 CHIPS Act 보조금의 조건을 재협상하는 한편, 세액공제 확대와 232조 반도체 관세를 결합해 '미국 내 생산 시 혜택, 수입 시 관세'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 CHIPS Act는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로 390억 달러를 배정하였으나, 미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이하 "GAO")의 2026년 8월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14개 기업의 지원약정이 변경되었고, R&D 예산 110억 달러 중 78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취소됨

– 첨단제조 투자세액공제(IRC 48D)는 2025년 OBBBA를 통해 2026년 이후 사용 개시 자산에 대해 25%에서 35%로 상향되었으나, 2026년 말일까지 착공한 시설에만 적용되는 시한은 그대로 유지됨

– 2026년 1월 14일 232조 포고에 따라 1단계로 H200·MI325X 등 일부 첨단 반도체에 25%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향후 관세 범위 확대와 미국 내 투자와 연계한 관세상쇄(offset) 도입이 검토될 예정

– 2단계 관세의 대상·세율·면제 산식·발효일은 후속 포고 등 시행조치로 정해지므로, 기업별 영향은 미국 투자 인정 여부와 최종 적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2025년 중국 영토 내에 위치한 반도체 생산 거점 전체를 대상으로 VEU 지위를 철회**

– 2025년 8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공장과 인텔 다롄 공장(현 SK하이닉스 소유)에 부여된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위를 2025년 12월 31일부로 철회

– 이후 2026년분 장비 반입에 대한 연간 허가가 보도되어 중국 공장 운영은 VEU에 따른 포괄허가에서 거점별 개별 수출허가(License) 관리로 전환되어 허가된 장비·용도·기간에 따라 유지·업그레이드·증설 가능 범위가 달라지므로, 매년 허가 갱신이 생산계획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 반도체·첨단제조 현행 정책 수단과 법적 한계 >

구분	법적 근거	현황(2026.10)	변경에 필요한 절차와 한계
보조금	CHIPS and Science Act (P.L. 117-167)	▪ 390억 달러 제조 인센티브 ▪ 14개 수혜기업의 기존 보조금 약정 수정(GAO, 2026.8.)	▪ 신규 재원은 별도 세출 필요 ▪ 조건 변경은 개별 협상에 의존해 의회 감독 대상
세액공제	IRC 48D	▪ 35%(2026년~), 2026.12.31. 착공 시한	▪ 연장·대상 확대는 세법 개정 ▪ 세입법안 하원 발의 원칙, 상원 수정 가능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 11002호)	▪ 1단계 25%(일부 첨단 칩) ▪ 2단계 투자연계 관세 검토 ▪ 폴리실리콘·파생제품 최저수입가격제 및 추가관세(한국 등은	▪ 포고문 개정 등 후속 시행조치로 조건을 확정하거나 변경

구분	법적 근거	현황(2026.10)	변경에 필요한 절차와 한계
		MFN·232조 관세 합산 15%) 2026.12.4. 시행 예정	▪ 법원은 법정 절차와 위임 범위 준수 여부만 심사해, 관세 부과 판단 자체는 다투기 어려움 ▪ 의회는 청문과 감독으로 견제
수출통제	ECRA·EAR	▪ H200 등 대중(對中) AI 칩 수출은 사안별 허가 심사 ▪ 한국 기업 중국 공장 장비 반입은 VEU 철회 후 연간 허가로 전환	▪ 상무부 재량이 큰 분야이나, 의회는 NDAA 및 개별 입법을 통해 통제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 출처: GAO, IRS, White House, BIS, 의원실·법안 원문 및 Reuters 종합

② 선거 결과의 정책 영향과 변화 전망

○ **반도체는 미국 내 생산 확대와 대중(對中) 기술통제에 양당이 모두 동의하는 대표적 초당적 분야로, 선거 결과는 정책 방향보다 수단(보조금 vs 관세)과 통제 방식(행정 재량 vs 입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반도체는 분점정부에서도 생산기반 지원 입법이 이루어진 분야로, 민주당은 국내 생산·인력 지원에 우호적이면서도 첨단 칩의 대중(對中) 판매에 대해서는 공화당 대중 강경파와 함께 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민주당 다수 의회에서는 지원 확대와 수출 제한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음

– 2022년 중간선거 후 여소야대 국면(상원 여당, 하원 야당)이던 2024년 10월 CHIPS법 지원 사업의 연방 환경심사(NEPA) 부담을 완화하는 'Building CHIPS in America Act'가 제정되었으며, 2026년 8월에는 48D 착공 시한 연장을 위해 Mike Crapo 상원 재무위원장(공화)과 Ron Wyden 간사(민주)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입법 공조가 이어지고 있음

– Pete Ricketts(공화)와 Coons(민주) 의원 등이 발의한 SAFE Chips Act of 2025는 현행 대중 AI 칩 통제 기준을 법률로 고정하고 30개월간 기준 완화를 제한하는 안으로, 이후 변경에도 심사와 의회 보고를 요구해 행정부의 통제 완화 재량을 제약할 수 있음

– 그 외에 중국 등 우려국에 첨단 AI 칩을 수출하기 전에 미국 내 고객의 우선 구매를 보장하도록 하는 GAIN AI Act of 2025가 발의되었으며, 첨단 AI 반도체 수출 시 안보영향 등에 대한 의회의 인증·검토를 요구하는 AI OVERWATCH Act는 Chip Security Act, MATCH Act와 함께 상원 FY2027 NDAA 수정안에 포함하기로 합의됨

○ 이는 첨단 칩 수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첨단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

< 반도체 관련 주요 계류 법안 >

법안	발의	주요 내용	국내 기업 영향
BASIC Act (H.R. 3204)	초당적(하원) ※ 테니(공)·수오지(민) 등	▪ §48D 공사 착수 시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 제안 ▪ 35% 공제율은 별도 법률 개정으로 이미 시행 중 ※ 법적근거: IRC §48D, OBBBA §70308	▲ 미국 공장 투자 세제혜택 적용기간 연장 가능
SEMI Investment Act (H.R.6055, S.1642)	초당적(양원) ※ 하원: 피츠패트릭(공)·보일(민) 등 ※ 상원: 블랙번(공)·베넷(민) 등	▪ §48D 적용 대상을 적격 반도체 소재 제조시설로 확대 제안 ▪ 하원안은 공사 착수 시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 제안	▲ 적격 소재 제조기업의 미국 투자 유인 확대 가능
SAFE Chips Act (S.3374)	초당적(상원) ※ 리케츠(공)·쿤스(민) 등	▪ 적대국 대상 첨단칩 수출허가 금지 및 기술적 통제 기준 법제화 제안 ▪ 제정 후 30개월간 기술 기준 변경 제한, 이후 위원회 승인·공고·의회 사전 설명을 거쳐 변경 가능	◆ GPU 수출제약에 따른 HBM 수요 영향 가능, 메모리 자체 통제와 구별
GAIN AI Act (S. 3150)	초당적(상원) ※ 뱅크스(공)·워런(민) 등	▪ 우려국 대상 첨단 AI 칩 수출허가 신청 시 미국 고객 우선구매권 및 국내 공급 우선 보장 인증 의무화 제안	◆ 미국 고객 우선공급에 따른 글로벌 공급 배분 변화 가능
Chip Security Act (H.R.3447)	초당적(하원) ※ 하이젠가(공)·포스터(민) 등	▪ 대상 첨단 AI 칩·시스템의 해외 수출·재수출·이전 전 위치검증 보안기능 탑재 등 요구	▼ 대상 제품의 위치검증·추적 관련 준수 부담, 독립 메모리의 직접 적용 여부와 구별
MATCH Act (S.4281)	초당적(상원) ※ 리케츠(공)·김(민) 등	▪ 동맹국의 대중 등 우려국 반도체 장비·서비스 수출통제 정합화 추진 ▪ 외교적 협의 실패 시 동맹국발 장비·서비스 등에 미국 통제 확대 제안	▼ 중국 거점의 장비·서비스 조달 제약 가능, 미국 기술 연계·최종사용자 점검 필요
AI OVERWATCH Act (S.4456)	초당적(상원) ※ 뱅크스(공)·워런(민) 등	▪ 우려국 대상 최첨단 AI 칩 수출허가 금지 제안 ▪ 허가금지 범주 외 대상 첨단 AI 칩은 허가 전 안보 영향 등에 대한 의회 인증·검토 요구 ▪ FY2027 NDAA 상원 수정안에 포함하기로 합의	◆ 수출통제 기준이 법률로 정해지고 의회 검토가 추가되어 수출 허가 여부 및 시기의 예측가능성 변화

※ 출처: Congress.gov, 각 의원실 보도자료, 언론보도 종합

※ 참고: ▲ 긍정 / ▼ 부정 / ◆ 중립

○ **NDAA는 매년 국방정책 전반을 묶어 초당적으로 협상되므로 수출통제 조항을 입법할 수 있는 주요 통로이나, 상원 토론종결 요건과 대통령 거부권이 면제되는 절차는 아니므로 상원안에 반영된 조항도 양원 타결 과정에서 수정 및 제외될 수 있음**

- Building CHIPS 법안은 2023년 상원 통과 FY2024 NDAA안에 포함되었다가 최종 조정 과정에서 제외된 뒤 2024년 별도 입법으로 제정됨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당시 FY2021 NDAA에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의회는 하원(2020.12.28.)과 상원(2021.1.1., 81대 13)의 재의결로 이를 무효화했는데, 이는 NDAA 경로가 협상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절차적 장벽도 안고 있음을 보여줌

○ **트럼프 2기 잔여 임기 동안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된 세액공제·관세·보조금 조건이 연장 협상과 의회 감독의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음**

- 2단계 반도체 관세는 232조에 따른 대통령 포고로 시행될 수 있어 양원 다수당 교체만으로 저지하기 어려운 만큼, 민주당 의회는 데이터센터의 전력요금·생활비 영향이 중간선거 쟁점으로 부상한 점을 활용해 데이터센터용 반도체의 관세 면제와 투자 인정 조건이 적정한지를 청문·감독 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있음
- 2026년 7월 CHIPS 지원 조건에 지분 연계 방식이 추가되고[18], 10월 14일에는 기존 수혜기업인 GlobalFoundries의 약정이 변경되어 9.55억 달러가 재배분되고 정부가 약 4%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 지원 조건이 변경되고 있음
- 이에 의회가 법적 근거와 기업 간 형평성 여부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감독 및 자료요구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보조금 혜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R&D 재원의 사용처에 대한 공개·감독 요구가 제기될 수 있음

③ 국내 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 **미국 내 생산 유도와 대중 기술통제 기조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전망이나, 투자연계 관세(행정 조치), 세액공제 연장(세법 개정), 중국 공장 운영(개별 수출 허가) 등 정책별 추진 방식이 서로 달라 선거 결과가 반영되는 시점과 범위는 각기 다를 것으로 전망**

[18] 미국 상무부는 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및 지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 기업의 소수 지분(의결권 없는 일반주 또는 지분 연계 증권)을 정부가 확보하는 방식을 도입함

< 반도체 의제별 추진 가능성과 국내 기업 영향 >

의제	트럼프 임기 중 추진 가능성	선거 결과 반영	국내 기업 영향
2단계 반도체 관세 (투자연계)	높음(세율·면제는 후속 포고로 확정)	▪ 민주당 양원 장악으로 청문·감독 강화	◆ 투자 인정·면제 요건이 수익성 좌우
48D 연장·확대	중간(세법 개정 필요)	▪ 초당적 지지	▲ 연장 시 미국 투자 수익성 개선
대중 수출통제 법제화	중간~높음(NDAA 반영이 관건)	▪ 의회 구도 변화에도 초당적 지지가 유지되는 의제 ▪ 최종 NDAA 문안이 관건	◆ AI 칩 통제로 HBM 수요에 간접 영향, MATCH 입법화 시 기존 시설 예외 여부 확인
CHIPS 보조금 조건 재협상	높음(행정부 재량)	▪ 민주당 양원 장악으로 약정 공개·감독 요구 강화	◆ 지급·지분 등 약정 변경조건 점검
보조금 신규 재원 확대	낮음(세출 필요)	▪ 재정적자 부담이라는 구조적 제약으로 이행 가능성은 제한적임	◆ 신규 예산·수혜 대상 불확실

※ 참고: ▲ 긍정 / ▼ 부정 / ◆ 중립

○ **국내 기업은 ▲48D 착공 요건 ▲2단계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 ▲대중 통제 감독 ▲CHIPS 지원약정 등 주요 정책 변수를 기업별 투자 일정과 현금흐름에 반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48D 착공 요건 관리]** 미국 내 공장 신·증설을 추진 중인 기업은 2026년 말까지 최종 규정상 착공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착공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함

– **[2단계 관세 협상 대응]** 면제 조건의 확정 시점과 범위는 미국 투자와 수입 조달계획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만큼, 한·미 합의의 '한국 이상의 반도체 교역규모를 가진 국가와 체결되는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약속을 근거로 미국 투자 인정 범위, 무관세 수입 자격·한도, 관계회사와 파생제품의 적용 조건을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중국 공장 리스크 대비]** 연간 허가의 갱신 일정과 유지·업그레이드·증설 허용 조건을 생산계획에 반영하고, EAR 수출허가와 CHIPS 보조금의 중국 투자 제한(가드레일)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MATCH Act의 장비 및 서비스 제한과 Chip Security Act의 AI 연산칩 위치검증 의무가 각각 중국 거점 장비 조달과 해당 제품 공급망에 미칠 직·간접 영향도 점검해야 함

– **[대중(對中) 통제 감독 대응]** 민주당의 양원 장악으로 H200 수출 허가 경위 등 행정부의 대중 수출통제 재량 조치에 대한 의회 조사가 확대될 수 있음. 중국 공장 연간 허가 등은 신청·승인 근거와 허가 조건 준수 기록을 정비해 자료 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한국과 제3국 생산 제품도 최소허용기준이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에 따라 미국 수출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급망 내 미국 기술·소프트웨어·장비 연계를 점검해야 함

– **[지원약정·투자 구조]** 미국 신규 투자의 수익성은 자산별 48D 공제, CHIPS 지급 조건, 수입관세 및 중국 사업 제한에 좌우되므로 착공·가동·지원금 지급의 시차와 지분·이익공유 등 개별 약정 조건을 현금흐름에 반영해 투자 구조를 설계하고, 한국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 적용 시 현지 실효세율 하락에 따른 추가과세 여부에 따라 미국 세액공제의 실질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적격 세액공제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례] **SK하이닉스 인디애나 공장**	▪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약 38.7억 달러(이후 4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를 투자해 HBM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이며(2026.8. 착공식, 2029년 하반기 양산 목표), CHIPS 직접지원 최대 4.58억 달러가 확정되었고 최대 5억 달러의 대출도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지원금은 약정상 이행 요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되고, 48D 공제는 착공 증빙에, 한국에서 생산해 반입하는 DRAM 웨이퍼의 관세 부담은 2단계 반도체 관세의 면제 조건에 좌우됨 ▪ 따라서 미국 투자 기업은 ▲보조금 지급 일정 ▲48D 착공 시한 ▲관세 면제 한도를 하나의 현금흐름 모델에서 함께 산정할 필요가 있음

시사점

- 2024년 Building CHIPS 법 사례처럼 미국 내 생산 지원은 분점정부에서도 초당적으로 입법될 수 있으며, 대중 수출통제 강화와 병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 48D 공제율 35%는 현행법상 적용되고 있으나, 신규 프로젝트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착공해야 합니다. 의회가 착공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2026년 말까지 착공이 어렵더라도 관련 증빙 확보와 2단계 관세 면제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한국은 향후 반도체 관세에서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대만)와의 향후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받았지만, 대만이 확보한 투자연계 무관세 수입 한도는 한국이 추가 협상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개별 기업의 면제 자격과 한도는 별도 시행조치로 정해지므로, 한국 기업은 투자 규모만으로 관세 혜택을 기대하기보다 시행조치의 세부 요건을 확인하고 투자 계획을 이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 NDAA를 통한 수출통제 입법은 양원 협상과 대통령 처리에 좌우되며, 중국 공장 운영은 거점별 수출허가와 CHIPS 가드레일의 영향을 함께 받습니다.
- CHIPS 지원의 지급·지분·이익공유 조건은 개별 약정에 달려 있어 지원금 수령 시점과 조건 변경이 현금흐름 및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주당의 양원 장악으로 행정부의 대중 수출통제 완화 조치와 CHIPS 약정 변경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행정부 재량 조치로 허가·혜택을 받은 기업은 근거 자료와 대외 설명 논리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5. AI·빅테크

① 현행 정책 및 법적 근거

○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AI·빅테크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단일 규제보다는 기존 법률, 특별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며, 대체로 EU 식의 규제가 아닌 산업 육성,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

– 트럼프 정부의 AI 산업 규제는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딥페이크, 국가안보 등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pin point 규제를 적용함

< 미국의 AI 관련 연방 규제 >

법·제도	주요 내용	AI 규제 측면의 의미
National AI Initiative Act	AI 연구개발, 부처간 협력, 인력 및 연구 지원 등	AI 산업 육성과 이를 위한 연방 기관의 R&R을 조정하는 법률
Take IT Down Act	AI 생성물(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형사 규제와 플랫폼 삭제 의무	AI 기술 자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닌 AI를 이용한 구체적인 피해 행위를 규율하는 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Y 2026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으로 Title66 (ARTIFICIAL INTELLIGENCE AND OTHER EMERGING TECHNOLOGIES)에서 AI 보안, 정보기관의 AI 사용 정책 (Deepseek 사용 금지) 등을 다룸	국가 안보와 연방 정보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 일반적인 AI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이 아님
NIST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AI 신뢰성, 위험 식별,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 기준 제시	National AI Initiative Act에 연계된 자율적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로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 출처: 미국국립인쇄소(GovInfo), NIST

– 트럼프 대통령은 AI 산업 육성 및 혁신 등을 위해 규제완화, 연방 차원의 전략 등과 관련한 다수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AI 규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음

< AI 관련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

구분	주요 내용
EO 14179 (2025년 1월)	▪ **미국 AI 주도에 대한 장벽 제거 –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폐지** -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발표한 행정명령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AI 정책(안전성, 신뢰성, 위험관리)을 폐지하고 규제 완화 및 속도전을 통한 미국의 글로벌 AI 선점 전략으로 전환
EO 14365 (2025년 12월)	▪ **연방 차원의 일원화된 AI 정책 체계 – 'AI Litigation TF' 설치** - 연방 차원의 광범위한 규제 선점(preemption) 권한을 주장하며 州마다 다른 AI 규제가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AI Litigation Task Force'를 설치하여 일부 주의 AI 관련 규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각 주의 연방정부 AI 정책 준수 조건을 관련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하여 AI 규제 철폐를 압박함

구분	주요 내용
EO 14409 (2026년 6월)	▪ **첨단 AI의 혁신과 보안 – 양자컴퓨팅으로부터 암호체계 위협 대응** -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이 첨단(frontier) AI 모델 출시 전 연방정부에 보안 평가 접근 권한을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추진

※ 출처: Whitehouse

– 빅테크에 대해서도 기존의 반독점법을 통해 시장지배력 남용을 제재하며, 개인정보보호는 연방 차원의 단일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각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규제하나,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연방 차원에서 부모 동의 등 기타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2025년 강화되어 시행 중

< 미국의 빅테크 관련 연방 규제 >

구분	관련 법
담합·독점·경쟁제한 등 불공정행위	셔먼법, 클레이튼법, FTC법 등
저작권 관련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 ※ 온라인콘텐츠와 AI 학습·생성물 관련 저작권 문제에 적용
개인정보보호	각 주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제 ※ CCPA/CCRA(캘리포니아), VCDPA(버지니아), CPA(콜로라도), TDPSA(텍사스) 등
아동 개인정보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 ※ 2025년 1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아동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타겟 광고 등에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검증 가능한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 보유기간 제한, 생체정보 관련 정의 확대 등을 포함

② 선거 결과의 정책 영향과 변화 전망

○ **AI 산업은 여-야의 정책 방향이 대립하는 분야 중 하나로, AI에 대한 야당의 신뢰성 원칙과 정부의 자율성 원칙이 충돌하며 규제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2월 EO 14365호를 통해 AI를 규제하는 주 AI법에 대한 소송 및 연방 보조금 연계 등으로 압박하고, 2026년 3월 'AI 국가정책 프레임워크(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I)'를 발표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는 주 AI법을 폭넓게 선점하도록 의회에 권고하고 있음

– 하지만 AI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양원 장악으로 주법을 선점하는 입법은 사실상 가능성이 없으며, 미국 법체계에서는 행정명령이 주법을 직접 선점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기 때문에 AI 규제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의회·주정부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의회와의 대립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각 주의 AI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행정명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이에 AI 주법을 수정·연기하거나(ex.콜로라도[19]) 반대로 행정명령과 대치하는 주도 나올 수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규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빅테크 관련 연방 규제 >

구분	규범	주요 내용	상태
연방(행정)	행정명령 제14365호	주법 소송 태스크포스, BEAD 보조금 연계, FTC·FCC 연방 기준 검토	시행 중(주법 직접 선점 효력 없음)
연방(입법 권고)	National Policy Framework	주 AI법 포괄 선점, 아동 보호·주 조달 등 예외	입법 미착수
텍사스	TRAIGA(HB 149)	금지 용도 중심 규제, 정부 AI 이용 고지	2026.1.1. 시행
캘리포니아	SB 53, CPPA ADMT[20] 규칙	프런티어 모델 안전 프레임워크 공개, 자동화 의사결정 고지·평가	시행 중(ADMT 단계 적용)
뉴욕	RAISE Act	대형 프런티어 모델 개발자 안전·사고 보고 의무	2027.1.1. 시행
콜로라도	SB 26-189	기존 AI법 폐지·대체, 자동화 의사결정 투명성 중심	2027.1.1. 시행

※ 출처: White & Case, Ropes & Gray, GLACIS, AIRiskAware

○ **그간 민주당은 AI 산업에 대한 정부의 자율규제 원칙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AI 기업에 법적 책임과 의무 부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AI 기업의 자율규제에 의존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AI로 인한 중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AI 위험성 관리 ▲알고리즘 투명성 법안의 입법을 추진해 왔음

< 민주당이 발의한 AI 규제 법안 >

법안명(발의일)	주요 내용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and Security Act of 2026 (2026.9.29)	▪ 첨단 AI 모델의 안전·보안 위험을 평가하는 상설 'AI안전위원회'를 상무부 내에 설치 ▪ 일정한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첨단 AI 모델에 대한 기술평가 및 보안기준 마련 ▪ AI 개발자는 안전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하고 안전
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2025.6.25)	▪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를 FTC가 마련

※ 출처: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US Congress

[19] 콜로라도는 차별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법(SB24-50)을 2026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xAI LLC 및 행정부(DOJ)의 소송 제기에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AI 규제 의도가 사실상 무산됨

[20]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감독기관(CPPA)이 정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Automated Decision-Making Tech.)로, 대상기술 판단 → 설계 단계 내재화 → 사전고지 및 투명성 확보 → 위험평가·감사 단계로 구성됨 (출처: KISA)

– 민주당은 회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나, AI 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근본적인 입장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음

– 연방 차원의 AI 규제 법안이 정부-의회의 대치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주 정부가 AI 산업을 규제하려는 입법은 지속적으로 증가[21]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과 주정부의 상반된 규제 프레임에 따른 업계의 불확실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빅테크의 규제는 민주당만의 의제라기보다는 초당적인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중간선거 결과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다만 親 공화당 성향을 보이는 빅테크 기업 수장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존재함**

– 빅테크,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기조는 일반적으로 민주당-규제 강화, 공화당-규제 완화로 볼 수는 있으나, 실제 과거 규제·정책의 집행은 이러한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나뉘지 않음

– 2000년 이후 정부의 빅테크 기업 반독점 규제는 강화-완화의 구도가 아닌 빅테크의 비즈니스 변화·발전에 따라 이슈가 되는 경쟁 제한 행위를 규제하였는데, 특히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심사 등 개별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해왔음

< 과거 미국 대통령의 빅테크 규제 기조 >

대통령	빅테크 반독점 정책 특징과 사례
조지 W.부시 (2001~2009)	전통적인 경쟁법을 적용하여 판단, 대형 기술기업의 결합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심사 <사례> FTC, 구글의 DoubleClick 인수 승인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반독점법상 기업결합 차단 근거와 분리하여 판단)
오바마 (2009~2017)	플랫폼의 독점구조 해체보다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위법행위 입증에 집중 <사례> FTC,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 조사·승인(2012), 구글의 검색·광고 관련 일부 관행에 대해 시정명령
트럼프 1기 (2017~2021)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문제를 연방 차원의 소송으로 전환 <사례> DOJ, 구글의 검색·광고 시장에서의 배타적 행위에 대해 소송 제기. FTC,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가 소셜네트워크 시장 독점 유지 수단이라고 주장
바이든 (2021~2025)	행정명령을 통해 경쟁정책을 정부 과제로 추진, 독점적 사업행위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자 인수와 플랫폼의 멀티호밍금지 행위에도 문제제기 <사례> FTC, 페이스북(메타)·아마존의 기업결합 심사 강화. DOJ, 애플의 스마트폰 독점력 유지 행위에 대해 소송 제기
트럼프 2기 (2025~현재)	표면적으로는 빅테크의 규제 부담과 기업결합 차단을 줄이려는 정책을 추진하나, 특정 빅테크의 독점행위에 대한 소송과 시정조치는 지속 <사례> 구글 검색·광고의 배타적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애플·메타·아마존의 독점적 사업행위에 대한 소송 지속

※ 출처: FTC, DOJ

[21] 주 의회에서 법률로 확정된 AI 법안은 2024년 99개 → 2025년 145개 → 2026년 1분기 1,561개로 증가 추세(NCSL)

- 즉, 정치적 방향성이 빅테크 규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이는 의회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보이는데, 2026년 6월 민주당의 반독점 규제 강화론을 대표하는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과 함께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경쟁사 배제 등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AICOA)'를 공동 발의하는 등 이미 초당적인 이슈로 자리 잡고 있음
- 다만, 빅테크 기업이 공화당에 정치자금 집중[22], 反 트럼프 게시물의 차단 의혹[23] 등 親 공화당 성향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이 장악한 양원은 트럼프 대통령 및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 수단으로 기업 대표를 포함한 주요 인사에게 의회의 조사·소환권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빅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AI 산업과 연계하여 민주당 주도의 규제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과 전력망 확충 비용은 최근 빅테크 규제 논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입법과 자체 조사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민주당이 발의한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비용 관련 법안 >

법안명	주요 내용
Ratepayer Protection Act	▪ 대규모 전력 소비자가 데이터센터 공급을 위한 추가 발전·송전·배전 인프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기준을 주 정부가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 ▪ 2026년 9월 16일 하원에서 417대 3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으나, 9월 30일 상원에서 57대 43으로 부결됨
GRID Savings Act	▪ 대형 전력 사용자가 전력망 업그레이드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발적으로 업그레이드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장려하는 법안

※ 출처: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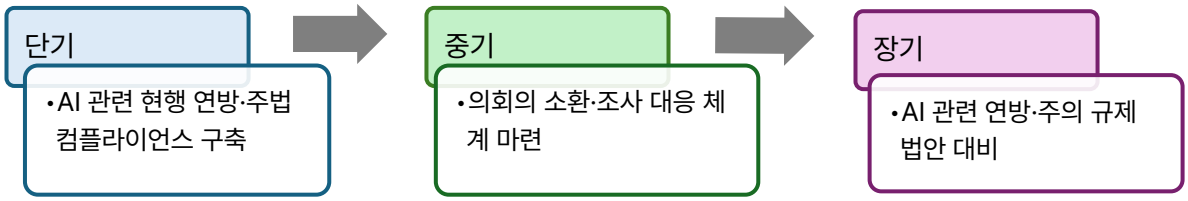
- 민주당은 데이터센터의 고용·경제적 가치에도 주목하고 있는데, 민주당 상원 의원들의 아마존·구글·MS 등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24]의 고용 및 전력비용 관련 보고서에서는 기업들이 제출한 데이터센터의 고용·경제적 편익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어 향후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조사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22] xAI의 일론머스크는 중간선거에서 약 3억 6600만 달러를 공화당에 기부해 최대 단일후원자가 됐으며, AI 기업 앤쓰로픽은 주 정부의 AI 규제 완화 입법 저지 단체에 2천만 달러를 기부하며 공화당 마샤 블랙번 의원 등을 우회지원

[23] 2025년말 X 플랫폼이 대형 정치계정의 실제 운영국가 위치를 강제 표시하는 업데이트를 통해 미국 외 반 트럼프 정치계정이 삭제되거나 비활성화되었으며, 올해 10월에는 반 트럼프(노킹스) 시위 주최측의 메타 계정이 시위 도중 일시적으로 차단

[24]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CoreWeave, Digital Realty, Equinix 등 7개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 대상

③ 국내 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 **[단기] 이미 입법되었거나 시행이 예정된 AI·빅테크 관련 연방·주 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 AI 생성물의 딥페이크를 규제하는 Take IT Down Act, 온라인콘텐츠와 AI 학습·생성물 관련 저작권 문제에 적용되는 DMCA, 아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규제하는 COPPA 등 이미 연방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필요

– 특히 각 주에서는 주법으로 AI를 규제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미국에 AI 제품을 출시하거나 서비스를 운영할 때, 해당 주에 AI 관련 법률이 실제로 적용되는 대상, AI 시스템의 유형, 사업자의 역할, 시행일 및 예외조항 등을 세세히 검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주별 AI 관련 규제 체계 및 기업의 대응 방안 >

규제 유형	주요 주 및 법률 사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첨단 AI 안전·투명성	캘리포니아 SB 53, 뉴욕 RAISE Act	안전·보안 정책 공개, 사고 보고 및 내부관리 체계 구축
AI 개발·활용의 일반적 규율	텍사스 TRAIGA, 유타 AI Policy Act, 콜로라도 SB 26-189	특정 AI 활용 금지, 소비자 고지, 자동화 의사결정 관련 의무 이행
특정 산업의 AI 사용 규제	일리노이 고용·정신건강 규제, 워싱턴 의료보험 AI 규제	채용, 치료, 보험 심사 등 의사결정 분야별 통제
합성미디어·초상권	테네시 ELVIS Act, 캘리포니아 투명성법	AI 생성물 고지, 무단 음성·초상 복제 및 기만적 콘텐츠 사전·사후 대응

※ 출처: AI Laws by State

○ **[중기] 민주당 의회는 트럼프 정부의 AI 입법 압박을 위해 관련 기업 주요 인사를 소환·조사하는 등의 우회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금번 중간선거를 통해 야당인 민주당이 입법 주도권을 잡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AI 규제를 위한 연방 차원의 입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은 양원에서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의석 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민주당 의회는 미국에 진출한 AI 기업을 대상으로 소환·조사권을 행사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 압박할 수 있는데, 과거에도 야당은 하원 장악 후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환장 발부, 조사, 청문회 등으로 대통령을 압박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가장 최근인 2023년 바이든 정부 시절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 장악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조사 및 청문회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과거 하원을 장악한 야당의 기업 대상 조사·소환·청문회 사례 >

시기	조사 대상	주요 내용 및 정치적 효과
2007년 조지 W.부시	블랙워터 등 이라크 재건 사업 관련 기업	▪ 이라크 재건 사업에 투입된 민간 군사·보안 계약업체에 대한 비용, 계약이행, 정부 감독의 적정성 검증 → 이라크 전쟁 수행 방식과 재건 정책 전반의 정치 쟁점화
2019년 트럼프	도이체방크 등 금융기관	▪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기업의 금융거래 조사를 위해 도이체방크 등 금융기관들에 소환장 발부 →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의 해외 금융 관계가 국가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핵심 의제로 부상
2023년 바이든	빅테크(메타·구글·애플)	▪ 연방정부가 기업들과 협력하거나 압력을 행사해 온라인 콘텐츠를 삭제·제한한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 → 기업의 사업행위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기업간 정보교환 및 정책 협력까지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

※ 출처: 언론보도 종합

- 과거 사례를 종합해보면 정권 친화적이거나 비리 의혹이 있는 기업들만 의회의 조사 대상이 된다기보다, 연방정부와 계약관계, 보조금 대상 여부, 플랫폼 등 반독점 및 국가안보 이슈와 연관된 기업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우리 기업은 먼저 사업 행위가 대통령의 핵심 정책 또는 정치적 논쟁과 연관되어 있는지 평가하고, 의회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연방정부와의 계약, 보조금, 규제기관과의 협의 또는 정책 참여 내역을 사전에 준비하여 의회의 소환장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에 진출한 국내 로펌과 협업하여 현지 로비펌 활용 등을 검토할 수도 있음

○ **[장기] 미국 내 AI 산업 규제 필요성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방 차원의 입법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Pew Research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의 57%가 AI의 사회적 위험이 높다고 평가한 반면 이점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25%에 불과하였으며, 약 60%는 AI 사용 방식에 대해 더 많은 통제가 필요하다고 응답, AI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Ipsos/Reuters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73%가 기업이 AI의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는 등 AI 기업의 자체적인 기술 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음
- 이미 미국 내 거의 모든 주에서 주 법으로 AI를 규제하고 있는데, 규제의 강도와 범위는 주지사의 소속 정당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AI의 규제가 이미 초당적인 이슈로 부상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AI 규제를 위한 연방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모든 주의 법을 선점(preemption)하기보다는 분야별 선점+주 법에 권한 이양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음

< AI 규제 연방법 예상 모델 >

[모델①] 연방법이 모든 주법을 선점 (트럼프 정부 방향)	[모델②] 연방법이 최소 기준 설정 + 주법 허용	[모델③] 중요 분야에서 연방법 선점 범위 차등
AI 개발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을 정하고 주별 AI 규제를 선점 (EO 14365의 목적과 일치)	연방법이 공통적인 최소 보호 기준을 설정하고 주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허용	AI 안전평가·보고, 알고리즘 투명성 기준 등 중요·공통분야에 대해 연방법이 선점 아동보호·사기·의료·고용·주정부의 AI 활용 등 세부 분야에서 주법 적용을 허용

– 이에 미국에서 서비스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연방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각 기업의 서비스와 연관된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예정된 주법을 상세히 분석하여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사점

▪ 금번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AI·빅테크 규제는 **연방 정부의 자율규제·산업 육성 기조와 의회 및 주 정부 간의 규제 의지가 공존하는 이중적 구조가 상당 기간 충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확보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괄적인 연방 AI 규제 법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선거 결과만으로 규제 방향을 단정하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의회의 입법·감독 활동, 주 정부의 법률 변화가 병존하는 복합적 규제환경을 전제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의회의 입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민주당 의회는 법률 제정보다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소환장 발부 등 감독 수단을 활용**해 행정부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에 정치·사회적 책임을 묻는 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은 실제 규제법의 적용뿐 아니라 의회 조사와 여론 이슈화로 발생하는 평판 및 대응 비용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 조사·자료제출 요구에 대비하여 법무-컴플라이언스-대관-홍보 부서간 협업 체계도 사전에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 다만, 빅테크 관련 규제는 AI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AI는 행정부와 의회간 규제 수준에 대한 의견 격차가 큰 반면, **빅테크의 플랫폼 시장 지배력 남용과 경쟁제한 행위, 기업결합 등 반독점 이슈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 및 송·배전망 확충 비용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이와 관련한 전력조달·비용부담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對중국 경제안보

① 현행 정책 및 법적 근거

< 미국의 對중국 경제안보 정책별 법적 근거 요약 >

구분	법적 근거	주요 내용
관세	▪ 무역법 제301조	▪ 외국의 불공정·차별적 관행으로 미국 상업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합의를 체결할 수 있음 ▪ 조치는 조사 대상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른 품목·산업 부과 가능
	▪ 무역확장법 제232조	▪ 특정 수입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상무부 조사에 따라 대통령은 해당 제품의 수입 제한 또는 관세 부과 가능
수출 통제	▪ 수출관리규정(EAR)	▪ 수출통제개혁법(ECRA) 하위 규정으로 BIS가 집행하는 행정규칙 ▪ CCL, Entity List, 해외직접생산규칙(FDPR) 등 실제 통제 수단을 규정함 ▪ 미국산 원천 기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제3국 제조 제품에도 관할권 행사
금융 제재	▪ 해외자산통제규정(FACR)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및 행정명령 등 ▪ 적성국교역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핵심 근거법률로 재무부 OFAC가 집행 ▪ 특정지정제재대상(SDN) 목록, 중국 군산복합체 자본 차단(NS-CMIC),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 등을 활용
투자 제한	▪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 재무부 CFIUS가 관할 ▪ 첨단 기술·데이터·인프라 기업에 대한 중국 자본 지분 인수 심사 강화
	▪ 포괄적해외투자국가안보법(COINS Act)	▪ 대외투자 통제 행정명령(EO 14105) ▪ 미국 자본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양자컴퓨팅·AI 분야 사모펀드·VC 투자 금지 및 신고 의무화

○ **[관세] 현재 대중국 경제안보 관련 관세는 무역법 제301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에 근거**

–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2025년 IEEPA에 근거해 부과된 대중국 펜타닐·상호관세가 해제됨

– 위법 판결 직후 한시적으로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관세를 즉각 시행(2.24.)하고, 최대 150일 적용 가능하여 관세 연장을 위한 별도 입법 없이 종료(7.24.), 만료 시점에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로 대체하면서 중국에 12.5% 관세를 부과함

○ **①무역법 제301조 | 2018년 트럼프 1기 당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이전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함**

– [강제노동·과잉생산] USTR은 2026년 3월 11일,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제301조 조사 2건을 개시, 이 중 [강제노동]은 19개 경제권 10% 및 중국·한국 등 41개 경제권 12.5% 추가 관세를 적용 ('26.7.23.)

– 또한 [과잉생산] 중국·한국 등 16개국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능력(structural excess capacity)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과잉생산이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는 경우 해당 경제권 제품에 대해 관세·비관세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

– [반도체] USTR의 '중국 반도체 산업 지배 목표 정책에 관한 조사' 발표('25.12.23.)에 따라 대상품목은 초기 관세율 0%('25.12.23. 발효)가 적용되고 18개월 후('27.6.23. 예정) 관세율이 인상되며, 구체적인 세율은 적용일 최소 30일 이전에 고시되어 기존 50% 관세에 추가로 중첩 부과됨

– [조선·해운] USTR은 중국이 불공정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한다고 보고 중국 기업이 운영·소유 또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 중국산 STS 크레인 등 특정 장비에는 100% 추가 관세를 적용('25.10.14.) 다만, 10월 30일 부산 미·중 정상회담 조치로 미국 항만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화물 처리 장비에 추가 수수료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27.1.10. 종료 예정)

○ **②무역확장법 제232조 |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수행하며, 이후 특정 수입품에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 무역 제한조치 시행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함**

– 현재 제232조 조치는 ▲시행중인 8개 품목(트럼프 1기 ①철강·알루미늄, 2기 ②자동차·부품, ③구리, ④목재, ⑤중대형 트럭, ⑥반도체, ⑦의약품, ⑧드론·부품), ▲시행 예정인 폴리실리콘('26.12.4. 예정), ▲관세 보류중인 핵심광물, 상업용항공기·제트엔진, ▲조사중인 풍력터빈, 의료기기·의료용품, 로봇·산업기계, 무연탄

– [철강·알루미늄·구리] 현재 미국은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최대 50%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완제품 중 '함량 가치'에만 제232조 관세를 매겼으나, 개편 후 완제품의 전체 통관 가치(Full Value)를 기준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산 원자재가 제3국을 거쳐 파생상품 형태로 우회 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자 함

– [폴리실리콘] 태양광 패널·반도체 핵심소재로서 중국이 글로벌 생산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는 2025년 7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하였고 올해 8월 6일 폴리실리콘·파생상품에 최저수입가격(MIP)과 추가 관세를 발표, 12월 4일 적용 예정임

○ **[수출통제] 수출통제개혁법(ECRA)을 근거로 하며, 하위 규정인 수출관리규정(EAR)을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제정·집행함**

– BIS는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①통제품목목록(CCL), ②거래제한목록(Entity List), ③역외 적용되는 해외직접생산규칙(FDPR) 등을 관리함

– [첨단 반도체·제조장비] 미국은 AI 고도화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고성능 컴퓨팅 칩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반도체 제조장비는 미세공정에 필수적인 노광·증착·세정 장비 등을 CCL에 명시하며, FDPR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미국 외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 기술·소프트웨어를 일정 수준 이상 사용했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

– [첨단 컴퓨팅(AI칩·소프트웨어)] 중국 AI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클라우드 데이터 센터(IaaS)로 우회하여 미국의 첨단 AI칩과 연산 자원에 접근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클라우드 우회접근 규제 및 고객 검증(KYC) 절차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원천 기술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하고 있음

– [양자정보 기술] BIS는 임시최종규칙(IFR) 등을 발표하며 기존 반도체에서 양자컴퓨팅 분야로 통제 범위를 확대하였고, 통제 대상은 양자 컴퓨터 본체뿐만 아니라 관련 장비, 부품, 극저온 냉각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개발 기술이 전방위적으로 포함됨

○ **[금융제재]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의 근거법 배경으로 해외자산통제규정(FACR)을 운영함**

– 자금세탁과 테러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제재 대상과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①특정지정제재대상(SDN) 목록, ②중국 군산복합체 자본 차단(NS-CMIC), ③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 등을 활용하고 있음

– 최근 OFAC가 대러시아·대이란 제재의 우회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물류·중개업체를 집중적으로 압박하면서 미국 환거래 계좌 개설 금지 또는 자산 동결 조치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26.8.28. 홍콩 소재 무역 중개법인 '카멩 트레이딩'(Kameng Trading), '26.4.24. 중국 민영 정유사 '헝리석화'(Hengli Petrochemical) 등)

– 미국이 이란산 석유를 대량 수입·운송한 중국 정유회사 및 관련 중개인들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목록에 등재하자, 이에 즉각 대응하여 중국 상무부는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 2021)에 근거한 미국의 제재 조치를 중국 내에서 승인·집행·준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집행 명령을 발표함

○ **[투자제한] 미국 자본·기술을 활용한 군사·정보·대량살상무기 능력의 향상을 중대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첨단 기술 분야 외국인투자(Inbound)와 해외투자(Outbound) 자본 이동을 통제함**

– 바이든 행정부의 "좁은 마당에 높은 장벽"(a small yard with high fence) 즉,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핵심 기술 영역만 좁게 설정해 보호하는 디리스킹(De-risking) 기조를 취함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규제 대상을 바이오, 항공우주, 식량, 인프라 등 전방위로 넓히면서, 이를 COINS Act 등으로 법제화하고, '미국 우선 투자정책'(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 발표하여('25.2.) 동맹국에는 신속 심사(Fast-track) 등 혜택을 부여, 중국 등 외국 적성국의 핵심 자산 접근은 차단함

–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 미국 내 부동산, 핵심 기술 및 인프라, 민감한 개인정보(TID) 등을 보호하기 위해 CFIUS의 외국인투자 관할권은 ①그린필드·부동산 투자 심사, ②TID 기업 소수지분 투자 규제, ③미신고 거래 사후 추적 및 강제 처분 등으로 확장

– 실제 중국 수이루이 그룹이 2020년 인수한 주피터 시스템즈(Jupiter Systems)에 대해 2025년 매각 명령이 내려졌으나 불응하자, 미 법무부가 2026년 2월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기간 동안 회사 경영권을 법정 관리인에게 넘기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임

–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 Act) | 행정부 차원의 행정명령 조치가 정식 법률로 격상한 것으로, 재무부가 법 시행 후 450일 이내 후속 규칙을 제정할 때까지 기존 규정이 계속 적용되며, 2027년 3월까지 재무부 신규 시행규칙이 마련될 예정

– 최근 미국 재무부는 중국 인공지능·로봇 기업 노에마트릭스(Noematrix)에 약 9만 2,478달러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국 투자사 아미디(Amidi, LLC)에 2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해외투자안보프로그램(OISP) 첫 제재 사례임('26.10.)

② 선거 결과의 정책 영향과 변화 전망

○ **미국 양당은 중국의 첨단기술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대중국 경제안보 정책의 기본 방향에 초당적 합의를 이루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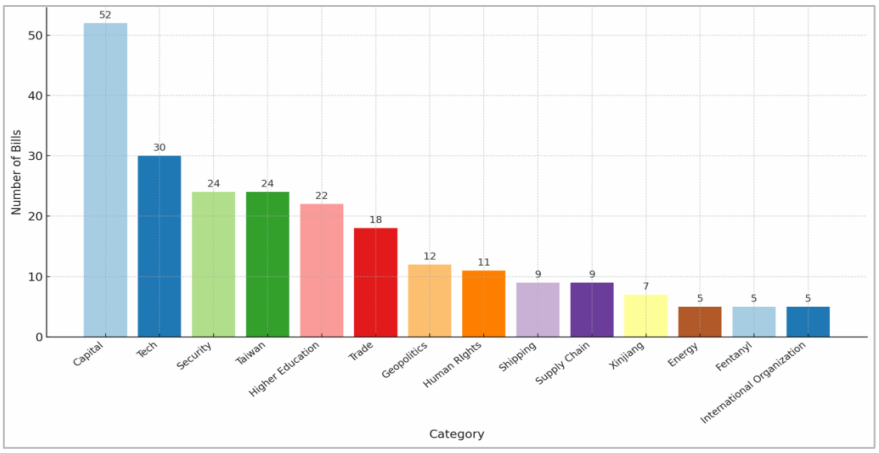
– 공화당은 관세·제재·보조금·수출통제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래 중심의 양자주의를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은 동맹 연대와 의회 입법에 기반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통상·수출통제 체계를 중시함

– 제119대 의회는 ▲상원(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민주계열 무소속 2석), ▲하원(공화당 217석, 민주당 212석, 공화 계열 무소속 1석) 모두에서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유지

– 중국 관련 법안 564건(2025년 8월 기준) 중 247건은 실질적인 대중국 견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공화당 발의는 119건으로 민주당 48건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대중국 입법을 주도

– 제118대 회기에서 설치한 중국특별위원회는 다수의 중국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실제 입법 성과는 일부 안보 분야에 국한된 반면, 119대 의회에서는 금융·기술·안보 분야에서 대중국 견제 입법이 가시화

< 미국 제119대 의회 중국 관련 발의 법안(2025년 8월 기준) >



※ 출처: ICAS(2025)

○ **특히 제119대 의회의 발의 법안은 반도체·AI 등 핵심 기술과 동맹국 공조 의무화, 통상 구조 재편에 집중되며, 대중국 견제의 실효성과 법적 구속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

– 첨단 반도체·하드웨어 및 AI 기술 유출 방지에 집중하며, 특히 반도체 제조장비 통제 강화 및 동맹국 공조(MATCH Act), 규제 대상 집적회로의 위치 추적 및 검증 기능 의무화(CHIP Security Act), 우려국 수출 라이선스 신청 시 미국 내 우선 공급권 보장(GAIN AI Act) 등이 발의되어 심의 중

– 또한 대중국 통상·관세 압박을 위한 법적 근거로 국가안보 및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관세 인상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발의하여 강력한 통상 제재를 추진

– 이미 통과된 입법과 대중국 수출통제 감독 강화에 발맞추어,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은 기술 통제의 정밀성과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제119대 의회 대중국 경제안보 관련 주요 입법 사례 >

구분	주요 내용
입법화 (발효)	▪ **포괄적해외투자국가안보법(COINS Act)** - 제정일: 2025.12.18. - 해외투자를 직접 규율하는 최초 연방법으로, 재무부의 조사 및 적발 권한을 강화
	▪ **생물안보법(BIOSECURE Act)** - 제정일: 2025.12.18. - 미국 연방기관·자금 수령 기관이 우려바이오기업(BCC)의 장비·서비스 조달 또는 계약 체결을 금지 - 우려바이오기업 목록 공표는 법 발효 후 1년 이내('26.12), 이에 따른 장비·서비스 조달, 사용 금지 조항은 2028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이행
	▪ **미국우위유지를위한수출통제투명성강화법** **(Maintaining American Superiority by Improving Export Control Transparency Act)** - 제정일: 2025.8.19. -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거나 완화하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의회의 감시와 개입 권한을 확대
입법 추진중	▪ **하드웨어 기술 통제의 다자간 조정법안(MATCH Act)** - 발의 날짜: 2026.4.2. / 발의처: 상·하원 - 미국 반도체제조장비(SME) 관련 국가 단위 통제, 우려국 시설 대상 포괄적 최종 사용자 용도 통제 - 법 시행 150일 이내 동맹국의 반도체제조장비 국가 단위 수출 통제 및 거부원칙(policy of denying)에 근거한 수출허가 도입 여부 입증 필요
	▪ **칩보안법안(CHIP Security Act)** - 발의 날짜: 2025.5.15. / 발의처: 상·하원 - (1차 보안) 법 시행 180일 이내 규제 대상 집적회로에 위치 검증 기능 탑재 의무화 즉시 시행 - (2차 보안책 개발) 1년 이내 수출통제법(ECRA) 준수 강화,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추가 보안 메커니즘 개발 - 수출기업은 위치 이탈·최종사용자 변경시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에게 보고 의무
	▪ **AI 감시법(AI Overwatch Act)** - 발의 날짜: 2025.12.18. / 발의처: 상·하원 -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H200의 대중국 수출을 완화하자, 이를 견제하며 첨단 반도체·제조장비 수출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 - 2026년 1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HFAC)에서 초당적 찬성(찬성 42표, 반대 2표)으로 통과(가결)
	▪ **국가 AI·혁신보장법안(GAIN AI Act)** - 발의 날짜: 2025.10.31. / 발의처: 상·하원 - 우려국 대상 첨단 통합회로 수출 라이선스 신청 시 미국인에게 우선적 구매권을 제공 - 15일 이상 공지하고, 동일 조건 시 미국인에게 우선 공급
	▪ **중국 보조금 대응 및 수출 경쟁력 법안** **(China Subsidy Response and Export Competitiveness Act)** - 발의 날짜: 2026.6.8. / 발의처: 상·하원 - 미국 수출입은행법(Export-Import Bank Act of 1945)을 개정하여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관행에 대응 - 인쇄 회로 기판(PCB) 및 의료 제조업 등 미국의 중요 산업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에게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확대
	▪ **공정무역회복법(Restoring Trade Fairness Act)** - 발의 날짜: 2025.1.23. / 발의처: 상·하원 -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를 정지하고, 기존 일반관세에서 고율관세로 변경 -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저율관세할당제도(TRQ) 도입 - 국가 안보, 불공정 무역행위, 인권에 근거한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상향 조정 권한 부과

※ 출처: 미국 의회 종합

○ **민주당 주도의 상·하원 체제는 일방적인 관세 부과보다는 동맹국과의 강력한 공조를 바탕으로, 첨단·신흥 기술 전반에 걸쳐 보다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대중국 통제망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

- [관세] 민주당은 전략적 목적의 대중국 관세 부과를 인정하지만 광범위한 관세가 미국 기업 및 소비자의 비용 부담·물가 상승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 유권자 인식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의 51%가 관세 비용을 미국인이 부담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일방적인 관세보다는 소비자 부담 완화와 정책 일관성에 중점을 두며 수출통제, 외국인 투자 심사, 보조금 지원 및 동맹국 협력을 결합하는 복합적 방식을 고려
- [수출통제] 민주당은 수출통제 지속성과 예측 가능한 제도화를 강조하며, 동맹국과 조율된 수출통제 정책을 선호하며, 바세나르 체제를 대체하는 소다자 협의체(미국·일본·네덜란드·한국 등)를 공식 규범화하고 동맹국에도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대중 수출 통제를 도입하도록 제도적 압박 가능성 존재
- 공화당 행정부가 협상을 위해 고성능 반도체 수출을 완화했던 것에 비판적이므로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거나 행정부의 규제 완화 권한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 [금융제재] 민주당은 동맹 공조 및 제도화된 경제안보 수단을 중시하는 기조이며, 대중국 전략적 경쟁 구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동맹국과 연계하여 제도화된 제재 시스템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
- [투자제한]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해 국가안보 관점에서 심사를 강화하는 흐름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모두 유지할 가능성이 큼
- 국방수권법(NDAA) 내 해외투자국가안보법(COINS Act)과 미 재무부의 세부 규칙안(NPRM) 발표를 통해 기존 반도체·양자·AI 중심의 규제가 극초음속·고성능 컴퓨팅 및 바이오 기술 분야로 이미 확대되었으며, 향후 의회에서도 첨단 로봇 등 여타 신흥 기술로 해외투자 통제 영역을 한층 넓히는 추가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③ 국내 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 미국 대중국 경제안보 정책의 핵심변수는 중간선거 이후 규제의 속도·범위·집행방식

– 미·중 무역휴전은 2027년 1월 10일 종료 예정된 단기 유예이므로 국내 기업들은 규제 공백기 동안 해외우려집단(FEOC) 요건 검토, 대체 공급선 검증 등 선제적인 리스크 정비가 필수

– 또한 2027년 1월, 제120대 의회 개원('27.1.3.)과 무역 휴전 만료('27.1.10.)뿐 아니라 입법 발의된 MATCH Act 등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이 요구됨

< 국내 기업의 대중국 경제안보 정책 관련 대응 방향 >

구분	주요 내용
규제 레이더 통합	▪ USTR·BIS·OFAC·CFIUS 등 규제 기관 동향과 의회 입법을 사업부별로 분산 관리하는 대신 품목·기술·거래처·투자 프로젝트 단위의 통합 모니터링 체계 운영
공급망 추적성 확보	▪ 중국산 원재료·부품 비중, 미국 기술 포함 여부, 제조국과 우회가공 경로, 거래처의 실질소유자를 즉각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계약상 안전장치 강화	▪ 관세·규제가 급변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격 조정, 공급처 교체, 납기 연장 및 계약 종료가 가능하도록 규제 변경 조항과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규정
미국 현지화 관리	▪ 단순한 미국 내 생산거점 확대보다 해외우려집단(FEOC),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원산지 및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분 구조, 데이터 접근권을 설계
기회 산업의 선점	▪ 조선, 반도체, 배터리, 핵심소재 등 중국 대체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는 고객 확보와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 ▪ 보조금·관세 혜택 조건의 변경 가능성을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

※ 출처: 본문 내용 종합

○ [관세] 미국 무역법 제301조 및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를 유지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적 혜택과 반사이익 기회로 작용

– 미국은 중국산 원자재가 멕시코, 베트남 등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미국 내 시장 공백을 선점하기 위한 한국·일본·유럽 기업 간 경쟁도 심화

– 국내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원산지 요건 및 공급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중국산 부품·소재 혼입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관세·2차 제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함

– 조선·해운의 경우, 중국산 선박 및 화물 처리 장비(STS 크레인 등)에 대한 항만 입항 수수료 부과 유예 기한이 2027년 1월 초로 연장됨에 따라 단기적인 물류 혼란은 피했으나, 향후 수수료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해운 물류비용의 상승 압박과 공급망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

– 한편 중국산 선박 및 항만 장비에 대한 미국 제재 압박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유예 종료 이후 한국 조선사들은 수주 증가, 경쟁력 우위 등 반사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동향 파악이 중요

–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련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풍력터빈, 의료기기·의료용품, 로봇·산업기계 등 관세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 기업들은 선제적 로비 활동·대응 마련이 필요

○ **[수출통제] 미국은 MATCH Act 입법 추진, VEU 철회 등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로 동맹국에 대한 압박이 심화될 수 있음**

- 올해 4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MATCH Act는 다자간 규제 공조를 위한 상·하원 초당적 입법이며, 중국 기업인 화웨이, SMIC, CXMT 등을 표적으로 DUV 액침 노광 장비 등의 수출·장비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입법될 경우 동맹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
- 미국 BIS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법인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철회('25.8.), 다만 규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산 장비 수요 계획을 매년 제출 받아 승인하는 '연간 승인 방식'을 도입·시행하고('26.1.) 추가로 중국 내 기존 공장의 공정 업그레이드·증설을 제한함
- 10월 21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으로 낸드플래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음(▲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을 286단 낸드 생산체제로 전환, ▲SK하이닉스는 다롄 공장을 현재 192단에서 240단 이상 낸드 생산으로 전환)

○ **[금융제재] 미국이 달러 패권 기반으로 2차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이 「반(反)외국제재법」으로 대응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양국의 법률을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 복합적 컴플라이언스 직면**

- 핵심 제재 대상과 중대한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를 할 경우 역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근 이란 등 제재 우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특정지정제재대상(SDN)에 등재되고 2차 제재 경고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 또한 제재 리스크의 노출 가능성 상존함
- SDN 명단에 이름이 직접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제재 대상이 직·간접적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은 자동으로 차단 대상에 포함되므로,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내 모든 거래처에 대한 실질 소유주 및 거래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는 고객 검증(KYC) 절차를 의무화·고도화하여 대응
- 미국의 제재 우회 경로 차단 조치에 대비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파트너사가 SDN·중국군산복합체자본차단(NS-CMIC) 목록 등에 포함되었는지 상시 점검 등 내부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강화

○ **[투자제한] 미국 내 진출 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핵심기술(TID), 부동산·그린필드 투자 심사가 강화되고, 미국 외 거래에 행정 제재가 부과되면서 실질적인 집행력이 구체화**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30D조는 미국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산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자 하며, 해외우려집단(FEOC) 규정에 따라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혜택이 전면 배제되어 전기차·배터리 제조사들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동맹국 체제로 전환해야 함
- 한국 배터리 기업은 중국에 의존하던 핵심 소재(수산화리튬, 전구체, 흑연 등)의 공급망 재편 부담이 증가되는 한편,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 CATL, BYD 등의 미국 진출이 막히면서 북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구조적 기회
- 또한 FEOC 규정을 준수하고 배터리 핵심광물을 조달하기 위해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합의된 '계열사 규칙'(Affiliates Rule) 등 미·중 기술 규제 유예 조치가 2027년 1월 10일 만료를 앞두고 있으므로 규제 재점화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모니터링이 필요

시사점

- 중간선거 이후의 대중국 경제안보 정책의 핵심 변수는 규제 속도·범위·집행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 구도는 신규 산업정책과 대규모 재정입법이 지연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기존 권한(제301조·제232조·ECRA·OFAC 등)에 기반한 조치는 계속될 수 있어 국내 기업은 행정명령·하위규정 등 행정조치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동맹국 지위는 기회이자 규제 전파 경로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관세·수출통제·금융제재·투자제한 등 규제 수단의 결합으로 산업 간 리스크가 연결되며 한 영역의 위반이 다른 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 국내 기업은 단기적인 반사이익에서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준에 부합하는 공급망 투명성, 거래상대방 검증, 기술·투자 통제 역량을 경쟁우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7년 1월 내에 제120대 의회 개원(1월 3일)과 미·중 무역휴전 만료(1월 10일), 계류 입법 재추진 가능성이 맞물려 있으므로 단기 리스크 관리의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ONTACT

신영수	변호사	기업법무 및 금융	02-528-5514	ysshin@yulchon.com
윤정근	변호사	공정거래	02-528-5179	jkyun@yulchon.com
이재근	변호사	송무	02-528-5596	jaklee@yulchon.com
조상욱	변호사	노동	02-528-5355	swcho@yulchon.com
박재현	변호사	기업법무 및 금융	02-528-5636	jpark@yulchon.com
오정한	변호사	송무	02-528-5742	jhoh@yulchon.com
전영준	변호사	조세	02-528-5661	yjchun@yulchon.com
김남호	변호사	부동산건설	02-528-5465	nhkim@yulchon.com
김근재	변호사	조세	02-528-5572	kjkim@yulchon.com
박준모	외국변호사		02-528-5773	parkjm@yulchon.com
문승욱	고문		02-528-6699	swmoon@yulchon.com
이백순	고문		02-528-5245	bslee@yulchon.com
조구래	고문		02-528-5705	krcho@yulchon.com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2026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